

공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중랑 안 '사람'과 '장소'의 공간사회학

소준철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소준철

경력

- (현)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공동연구원
(현)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현)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걷고싶은도시』 편집위원장
(현)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이사
(현) 자원을일구는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현)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쓰레기의 문법” 연재
(전)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한국체육대학교 강사

학력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학전공 박사 졸업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학전공 석사 졸업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연락처

<http://www.juncholkimso.me>
junchol.kim.so@gmail.com

연구

단행본

- 『가난의 문법』(2020, 단독)
- 경향신문 선정 2020년 올해의 책 선정작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년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절멸과 간생 사이: 형제복지원의 사회학』(2021, 공동)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년 세종도서(학술) 선정작
『똥의 인문학』(2021, 공동)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년 세종도서(교양) 선정작
『서울 동의 역사 - 강서구』(2024, 공동)
『서울 동의 역사 - 광진구』(2025 예정, 공동)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 방이동』(2026 예정, 공동)

연구논문

- 「정부의 ‘자활’ 정책과 형제복지원 내 사업의 변화」(2021)
「청계천에서 난지도로」(2023)
「느린재난 앞에서 선 노인」(2024)

서평

- 「가입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2024)
「울면서 달려들어도 괜찮은 사회를 상상하기」(2023)
「‘상호의존’이라는 희망」(2022)
「‘강남화’라는 방법과 그 가능성에 대하여」(2019)
「기록과 ‘소설들’을 포개어 서울을 다시 읽기」(2019)

“공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소개

도시서울의 인문사회과학

8/23 (토) 10시-13시

도시서울을 어떻게 연구할까 (강의)

8/30 (토) 10시-13시

서울살이와 일상사회학 (강의)

도시서울에서 ‘공존’ 돌아보기

9/6 (토) 10시-13시

1969, 서울의 ‘대-개발’과 삶의 변화 (강의)

9/13 (토) 10시-13시

1983, 달동네와 달동네사람들의 삶 (강의)

9/20 (토) 10시-13시

1995, 대도시 서울의 양면성 (강의)

9/27 (토) 10시-13시

2002, 서울아파트의 자서전 (강의)

10/4 (토) 10시-13시

2015, 늙은 도시 서울 (강의)

중랑에서 ‘공존’을 상상하기

10/11 (토) 10시-13시

중랑을 산책하기 (강의/산책)

10/18 (토) 10시-13시

중랑을 기록하기 (워크숍)

10/25 (토) 10시-13시

중랑의 켜 쌓기 (워크숍)

11/1 (토) 10시-13시

중랑에서 같이 살기 (강의/토론)

11/8 (토) 10시-13시

공존가능한 중랑 만들기 (강의/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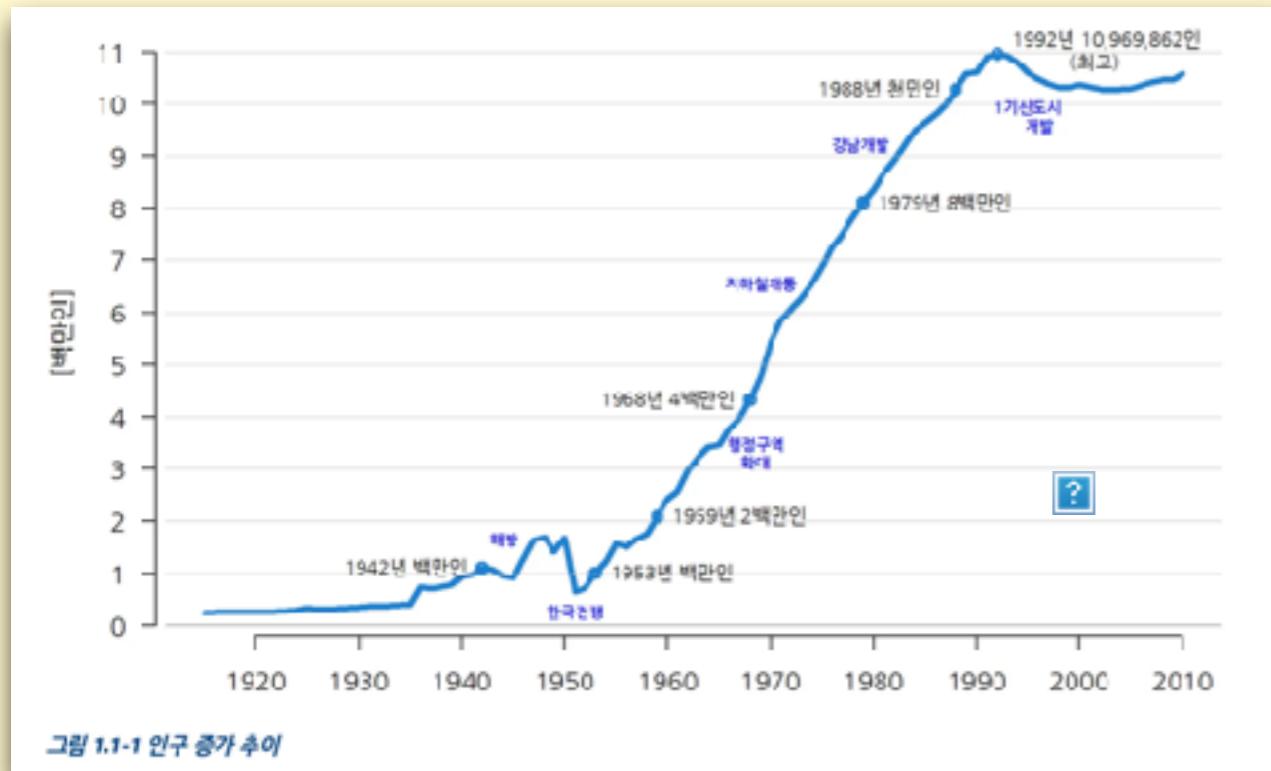
도시서울을 어떻게 연구할까?

도시서울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의 연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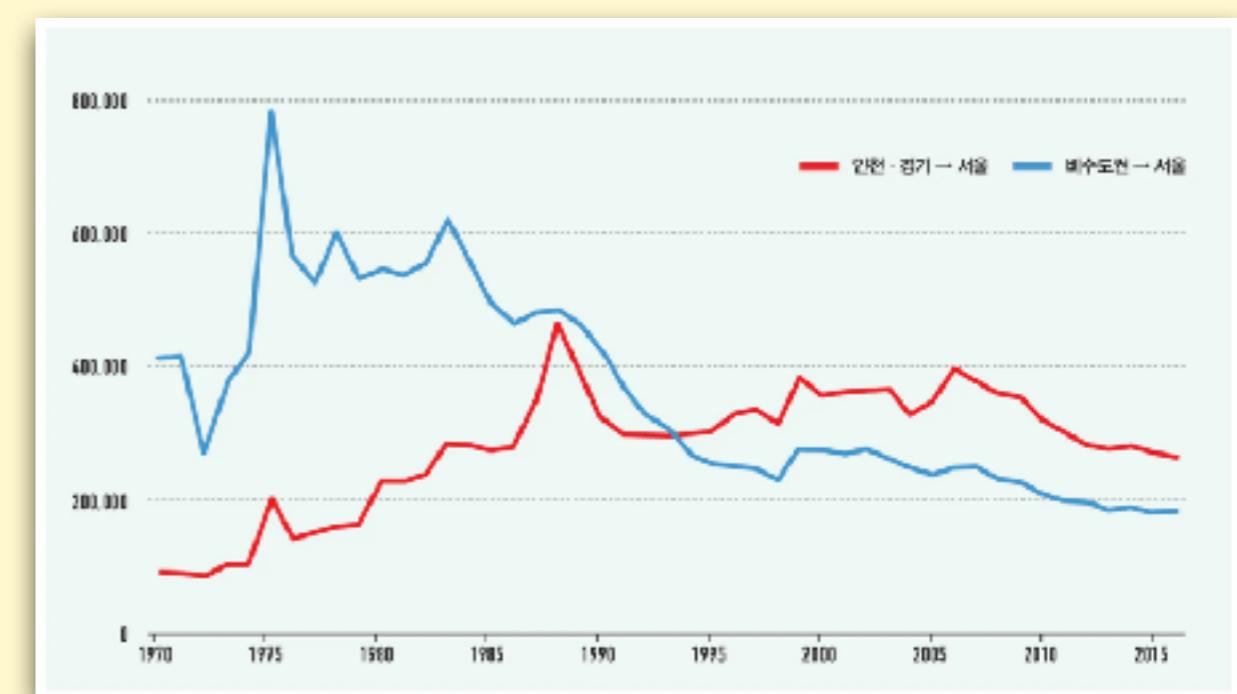
소준철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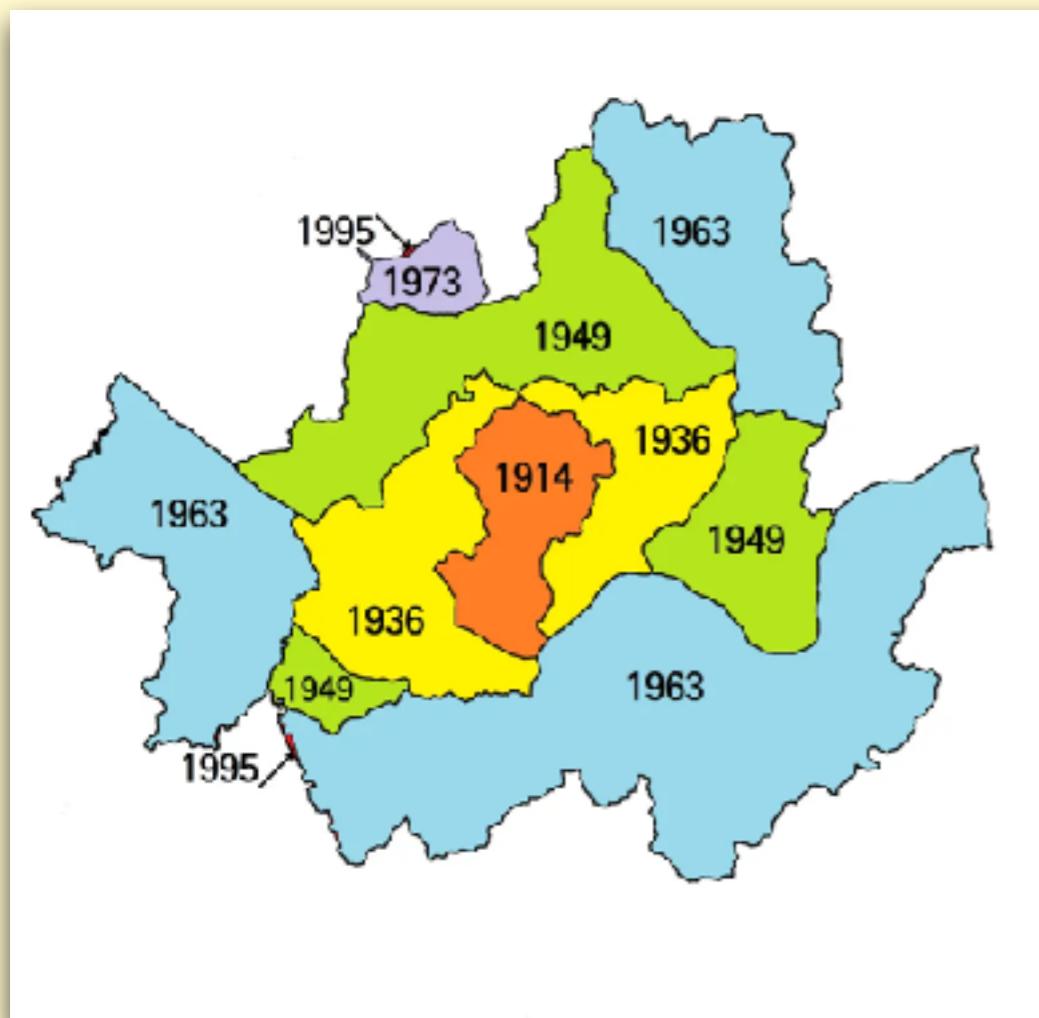
서울사람 (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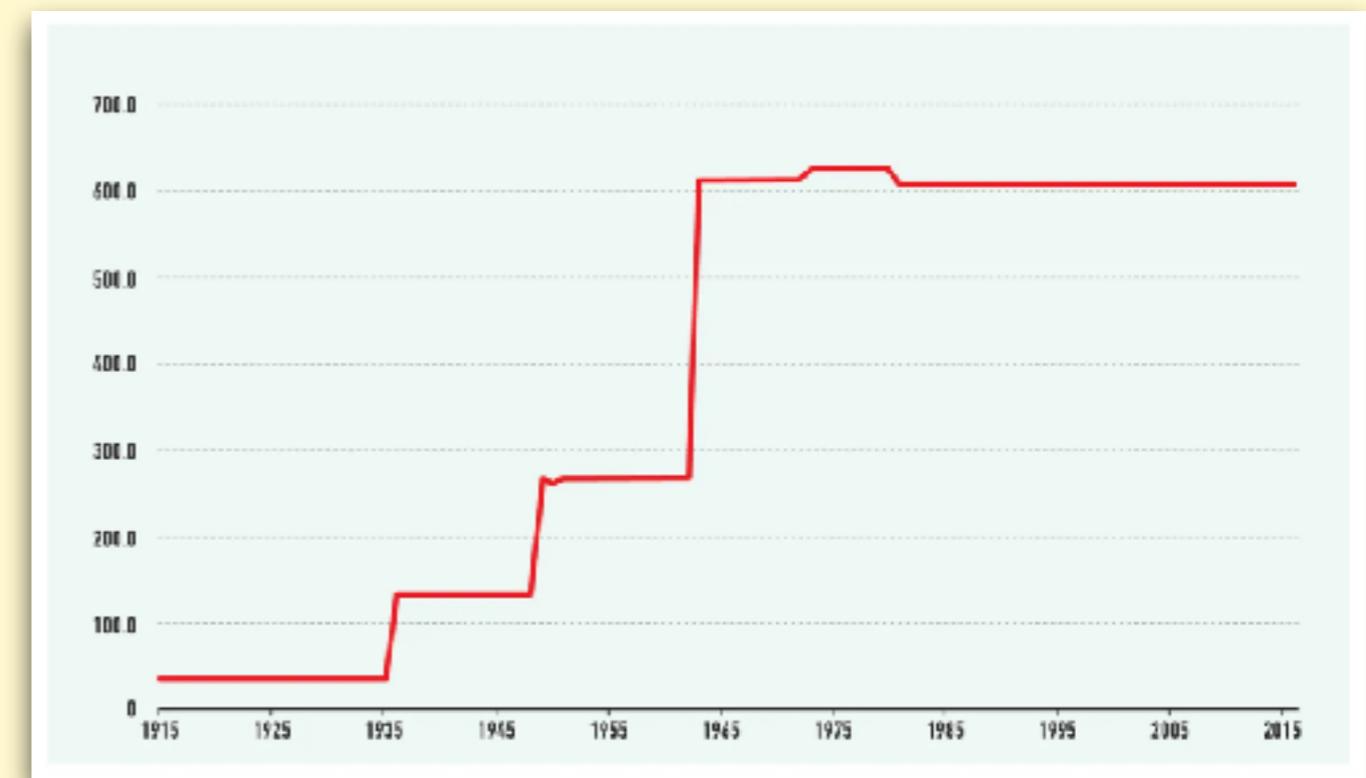
인구 증가 추이(1920-2010)
출처: 서울연구원



서울지역(면적)의 변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변천도(1914-1995)



행정구역 면적 변화

출처: 서울연구원

경성부는 어쩌다
‘서울’‘특별시’가 되었나

KBS
NEWS 9

단독

"일본 항복했습니다"
광복 알린 최초 한국어 방송

경성부는 어쩌다 '서울', 그리고 '특별시'가 되었나?

경성부에서 '서울특별시'로

경성부

- 식민지기 당시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시대 한성의 업무를 담당하던 한성부가 경성부로 개칭되었음.
- 한성부보다 격이 낮은 경기도에 소속되었음.
- 조선총독부는 제령 7호로 지방행정제도를 개정하며 '부'는 부 조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함.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순수한 자치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행정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관의 지휘 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
- 경성부는 경기도의 '부'가 되었지만, 경성부의 고유한 사무보다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였음.
- 일제에 예속되어 있지만, 조선의 중심도시로서 자치보다는 관치행정, 또한 일본식 제도 이식의 문제가 '부'제 시행 과정에서 강하게 나타났음.

'한성부'에서 다시 '경성부'로

- "해방 후 일반시민들은 '경성부', '한성시', '서울시' 등의 이름을 통일성 없이 사용했고, 공식이름은 여전히 '경성부'였음. (1975/1/25 조선일보)
- 1945/9/14부터 미군정은 경성 대신 '서울'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나, 서울시, 한성시, 경성부라는 명칭이 혼용되었다(김제정, 2014, 89쪽).
- 1945년 말, 경성부 고문회의에서 한성시로 쓰고 서울시로 읽는 것으로 결정(김제정, 2014, 86쪽).
- 우측 그림, 1946/3/13 조선축구진흥회 한성시정대항축구대회(한성시청과 조선일보의 공동후원) 관련 기사 내 "한성"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1946/5/10, 이범승 부윤이 사임한 이후, 다시 '경성부'로 회귀(김제정, 2014, 8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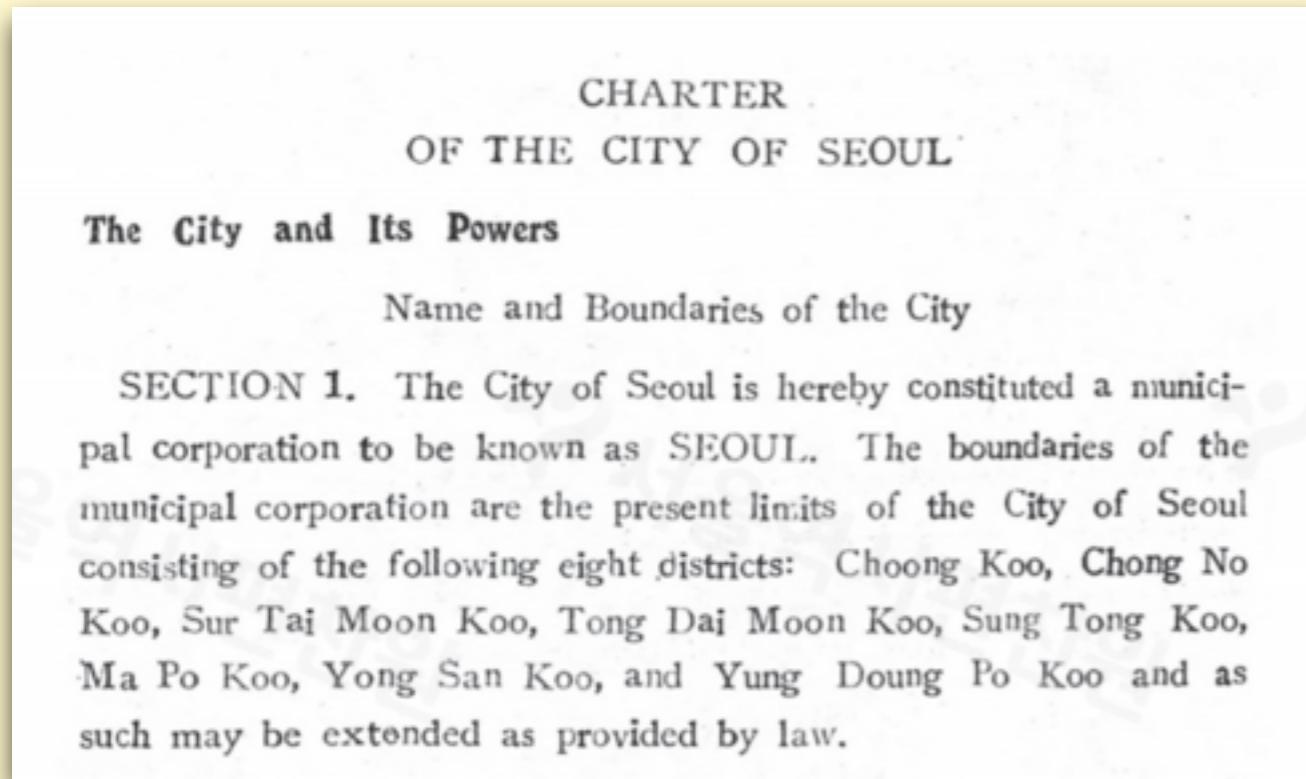


1946/3/13 조선일보

경성부에서 '서울특별시'로

서울

- 1946/8/10 군정청은 <서울시 현장>(영어, 아래 그림)을 발표.
- 1946/9/18, 군정법령 106호 <서울특별시 설치>가 발표.
- 이후, 1946/9/28, 경성부는 서울특별자유시로 개칭하였다.
- 이후 1949/11/4, 지방자치법의 영향으로 현재 '서울특별시'로 재개칭.



<서울시 현장> 영문

수도(서울)

- 본래 활용. 왕이 사는 도시인 '수도(首都)'를 가리킴.
- 어원: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서라벌/서벌/서나벌/서야벌' 등으로 불렀으며, 백제 말의 수도인 부여를 '소부리'라 불렀음. 이때 '서'는 높고 신령스럽다는 의미인 '수리/솔/솟'의 음과 통하며, 울은 '벌/부리'에서 변음된 것. 즉, '큰 마을', '큰 도시'라는 뜻. 삼국시대 수도를 가리키는 것에서 보통 명사화되었음. 서울은 '경도(京都)'라는 한자어로 표시되며, 이때 '경'은 크다, '도'는 거느린다/번성하다는 뜻을 가진다.
- 비슷한 말: 황성(皇城) · 제경(帝京) · 경사(京師) · 경조(京兆) · 도읍(都邑) · 왕경 · 경도 · 황도(皇都) · 왕도(王都) · 도성(都城) · 수도 · 국도(國都) · 수선지지(首善之地)

<서울시헌장>(1946/8/10, 영문)의 내용

제1장 시와 시의 권한 (제1조-제3조)

- '경성부'를 '서울시'로 칭하고 **특별자유시(municipal corporation)**로 함.
-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를 관할함.
- 서울시의 권한 (1) 시의 업무, 임원, 직원과 관련된 권리와 권한 행사, (2) 이를 위하여 필요, 편리, 부수적 모든 법률, 법령, 규정 제정 실행, (3) 도와 시에 부여된 권리와 권한을 갖고, (4) 본 헌장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음. 즉, 자치적 권리가 있음.

제2장 선출직과 임명직 임원 (제4조-제11조)

- 시민 투표에 의해 선출된 임원, 교육회 회원.
- 시장이 임명하는 회와 위원회의 회원, 위원, 학교 관리관, 각 회와 위원회가 그 소속 수석집행관으로 임명한 집행관, 행정관장, 행정관장 관리 하 부서의 부장, 검시관, 과세사정관, 회계관, 징세관, 기타 법령으로 규정 또는 지정한 직원을 시 임원으로 함.
- 시장, 참사회 회원, 회계검사관, 법무관과 재정관리관은 시민투표로 선출하는 선출직 임원으로 규정함.
- 선출직 임원과 임명직 임원의 임기, 권한, 보수 등 규정함.

제3장 입법 절차(제12조-제16조)

- 참사회의 활동 중심로 결의와 법령의 조치 규정
- 모든 입법 조치는 법령에 의하여 모든 법령의 머리말에는 "서울 시민에 의하여 제정함"이라는 표현을 명시해야 함.
- 참사회 의결 이후 시장의 승인 과정, 법령과 결의의 기록 공표와 효력 발생, 긴급 안건 등의 내용 명시함.

제4장 각회, 위원회, 각부장과 임원의 일반권한과 직무 (제17조-제22조)

- 참사회와 시장 또는 헌장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와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에 대하여 명시함.
- 선출직 임원과 임명된 부장의 권한과 직무, 그리고 청문.
- 이들의 청문/조사와 소환권, 행정사무 불간섭, 행정법규, 허가와 검사 등 규정

<서울시헌장>(1946/8/10, 영문)의 구성

제5장 선출직 임원의 권한과 직무(제23조-제29조)

- 시장, 시 법무관, 재정관리관, 회계검사관, 선출직 임원의 보좌관과 그 직원, 행정관장의 권한과 직무 규정.
- 제29조, 시의 행정업무에 관하여 시장과 참사회가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관장이 관할하는 모든 행정부서에 대한 감독/통제를 위한 권한과 직무를 가짐.

제6장 각 부(제30조-제48조)

- 공영부, 토목에 관한 법률 절차, 상하수도와 기타 부속 공사, 궤도, 영선보관국, 부동산국, 검시관(법의관), 소방부, 방화국, 학무부, 교육 회의 권한과 직무, 학교관리관, 도서국, 공익사업부, 보건위생부, 후 생부, 상공국, 하가소원회
- 영문판에는 '경찰부' 내용이 존재. 한글 공포문에는 제35조와 제36 조 사이에 단지 '부'의 명칭만 적혀 있음. 1946년 4월 미군정이 경찰을 국가경찰로 개편하였고, 이로 인하여 한글 번역본에서 빠졌음.
- 영문판에는 다음과 같은 조문이 적혀 있다. "Police Department - The police department shall have all the powers and duties that are now or that may hereafter be conferred on the police department at provincial level." 이를 번역하면 "경찰부는 도 경찰부 수주에서 부여되는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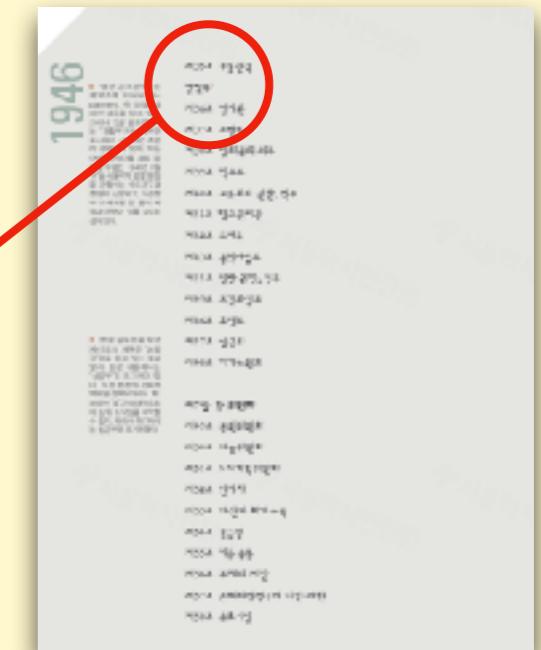
제 7장 각 위원회 (제49조-제58조)

- 공원위원회, 예술위원회, 도식계획위원회, 인사처, 예산과 회계수속, 봉급령, 기금 융통, 부채의 제한, 손해 배상 청 구에 대한 제한 등에 관한 내용.
- <서울시헌장>의 효력 발생일.

유효시일⁷⁷

제58조 이 헌장은 1946년⁷⁸부터 유효하다.⁷⁹

제35조 부동산국
경찰부⁶
제36조 검시관



<서울시 헌장> 한글

경성부에서 '서울특별시'로

'서울'을 누가 제안했는가

- 김형민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나는 취임 즉시 현 서울시의 명칭을 ‘한성부’에서 ‘서울시’로 개칭했다.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른바 서울시를 ‘한자’로 쓸 수 없지 않느냐는 이유였다. 또 서울은 수도(큰 도시)를 의미하는 보통명사이지 역사나 상징성이 있는 고유명사가 될 수는 없다는 논리의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수도 이름을 ‘서울’로 하면 이것이 곧 고유명사가 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226-227).”

<서울시헌장>(1946/8/10)의 등장 과정

- 1946년 4월 이전 미군정 산하의 총무과를 살펴봐야 함. 당시 법률 고문인 Emery J. Woodal이 미군정 초기 법률의 효력을 갖는 광범위하고 잠정적으로 영구적인 성격을 갖는 ‘법령’을 기초하는 입법기능을 가짐. 당시 총무과 산하 법무계(정부자문부, 법연구부, 법초안부, 법조사부 등)에서 영문으로 기초한 법안 생산. 이후 행정계의 번역부를 통해 국문 번역.
- 1946년 4월, 미군정은 3월 개최되었던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에 들어감. 이즈음 군정기구 개편 시도. 총무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사법부로 이전. 시법부의 법률심의국(법적 의견 및 법률적 문제 검토), 법률기초국(<관보> 생산), 법률조사국(필요 법률 조사 및 변경 권고 등)으로 이전.

- 1946년 4월 26일 미군정 민정장관과 군정장관이 법률심의국에 <서울시헌장>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 이에 대한 법률심의국의 질의는 다음과 같다.
 - 1) 기존 정부 시스템을 어느 정도 재정비해야 하는지?
 - 2) 시정부를 세우지만, 이후 만들어진 한국정부를 세우는 것에 의한 변경 가능성 고려
 - 3) 도시로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적 문제,
 - 4) 정부시스템 수립과 이를 기초하느 헌법 제정 이전에 성루시 정부를 수립하는 건 시기상조 아닌지?
 - 5) 시카고나 일리노이 등의 특수한 도시 헌장인지, 주어진 등급(a given class)의 모든 도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인지? 여기서 문제는 투표권, 그리고 “경찰” 등.
 - 6) 시 법령이 국가 법령을 무시할 수 있는 건지?
 - 7) 미국과 달리, 선출직 임원과 관련하여, 순수한 행정직 공무원을 포함한 가능한 많은 공무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분위기.
 - 8) 도 및 중앙정부의 조직과의 연결.
 - 9) 이 헌장은 미국 도시에서 채택된 헌장처럼 읽혀지며,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정부시스템을 가진 나라에 위치한 동양의 도시에 허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님.
 - 10) 서울시헌장은 채택되었고, 서울은 중앙정부 및 기존 도와의 관계에서 도의 위상을 가진 **독립도시 independent city**로 만들어짐.

공보부 특별 발표 (1946/8/15, 영문)

미군정청 공보부의 특별발표

- “극동역사상에 처음으로 한 도시가 시민의 소원대로 자치할 현장을 바덧다. 조선군정장관 아취얼 러취 소장이 금일발표한 현장에 의하여 서울이 경기도 관할에서 이탈하여 완전한 한 개의 도 수준으로 승격하게 되었다. 여기에 있어서 조선은 유사이래 처음으로 민주의 지방자치의 도시를 가지게 되었다.
- “군정청에서는 해(당) 현장에 있어서 서울시민에게 대하여 실질적 기관을 준 것이오. 장래에 대한 약속을 준 것은 아니라고” 러취 장군은 말하였다. “이것은 전 일본법률의 모호한 해석을 제거하는 것으로 국민이 정부의 노복(종살이?)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기 현장에 명기된 바와 같이시정은 즉시 현임 관리가 보통 선거법이 설정될 때까지 차를 운영할 것인데, 이 법률이 제정될 때에는 서울시민이 투표로써 시장을 선거하게 될 것이다. 이 현장에 의하면 시에서는 도청과는 관계 없이 그의 직권으로써 시민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법령과 규정을 통과시키고 차를 개정하게 되어 있다. 시에서는 시민의 건강, 보안위생, 교육, 오락급일반 후생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선거기관도 국민이 자유로 그 대표를 선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서울'이란 명칭의 첫 번째 활용,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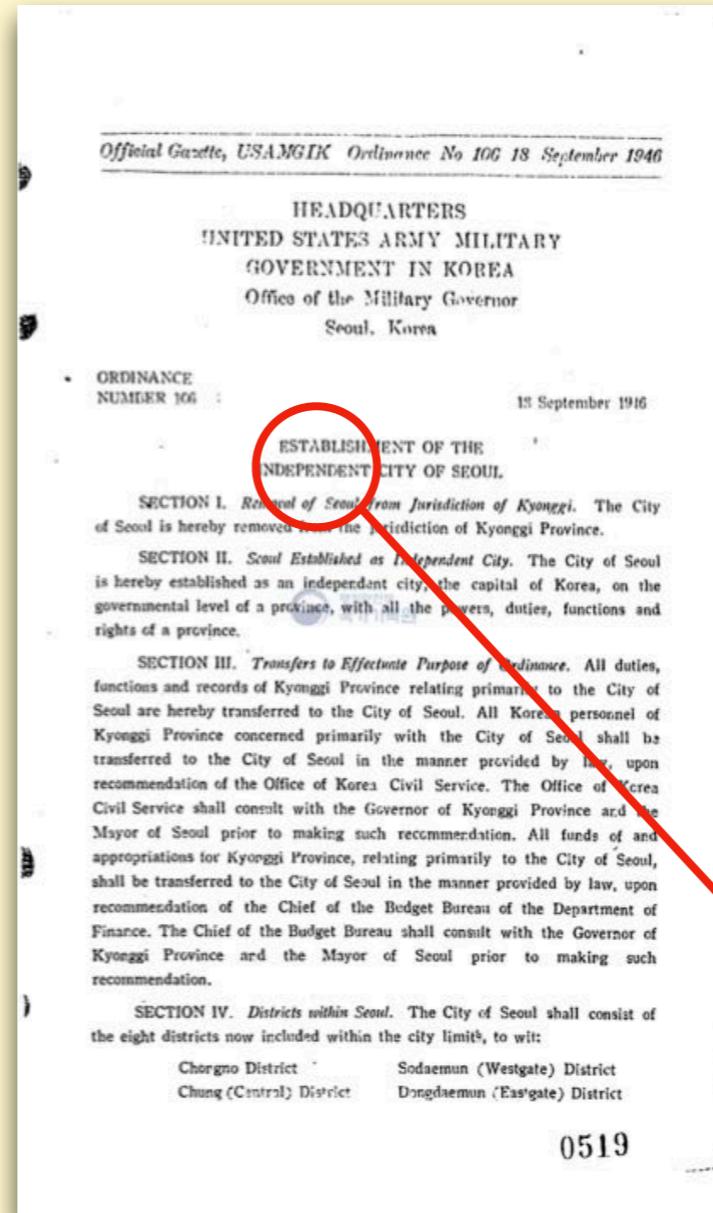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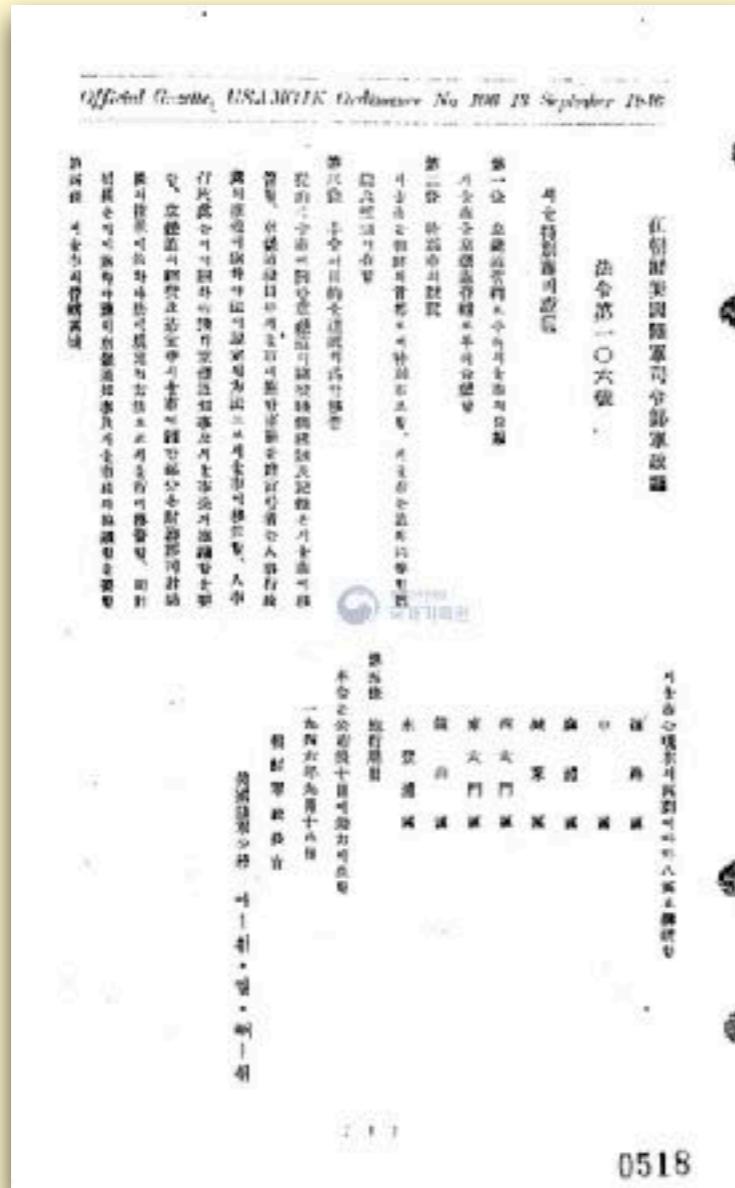
- 식민지기 당시 “대학기관 - 구제전문학교(旧制專門學校)”의 구분
- 구제전문학교는 1903년 “전문학교령”에 따라, 요즈음의 중학교/고등학교 통합과정에 해당하는 구제중학교/구제여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3년 이상 교육하는 학교. 이는 영어로 college, 즉,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 (대학은 제국대학의 전유물)



-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미 군정법령 102호)에 따라, 경성대학(경성제국대학)과 “경성법학전문학교·경성공업전문학교·경성광산전문학교·경성의학전문학교·수원농림전문학교·경성경제전문학교·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등이 폐지되고,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내 단과대(법과대학·공과대학·의과대학·농과대학·상과대학·치과대학”)로 개편되었다.

경성부는 어쩌다 '서울', 그리고 '특별시'가 되었나?

<서울특별시의 설치>(1946/9/18)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T CITY OF SEOUL.

SECTION I. *Removal of Seoul from Jurisdiction of Kyonggi Province.* The City of Seoul is hereby removed from the jurisdiction of Kyonggi Province.

"서울특별시의 설치"(1946/9/18)
<미군정청 관보>

경성부는 어쩌다 '서울', 그리고 '특별시'가 되었나?

<서울특별시의 설치>(1946/9/18)

법령 제 107호 <서울특별시의 설치>

제1조 경기도 관할로부터의 서울시의 분리

서울시를 경기도 관할로부터 분리

제2조 특별시의 설치

서울시는 조선의 수도로서 특별시로 함. 서울시는 도와 동등한 직능 및 권한이 유함.

제3조 본령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이관

종전 서울시에 관한 경기도 직원 중 서울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는 인사행정처의 추천에 의하여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서울시에 이임함.

인사행정처는 이에 관하여 예히 경기도지사 및 서울시장과 협의함을 요함

경기도 경비 및 기금 중 서울시에 관한 부분은 재무부 사계국장의 지시에 의하여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서 서울시에 이관함

사계국장은 이에 관하여 예히 경기도 지사 및 서울시장과 협의함을 요함

제4조 서울시의 관할구역

서울시는 현재의 구획에 따라 8구로 구성함

종로구, 중구, 마포구, 성동구, 동대문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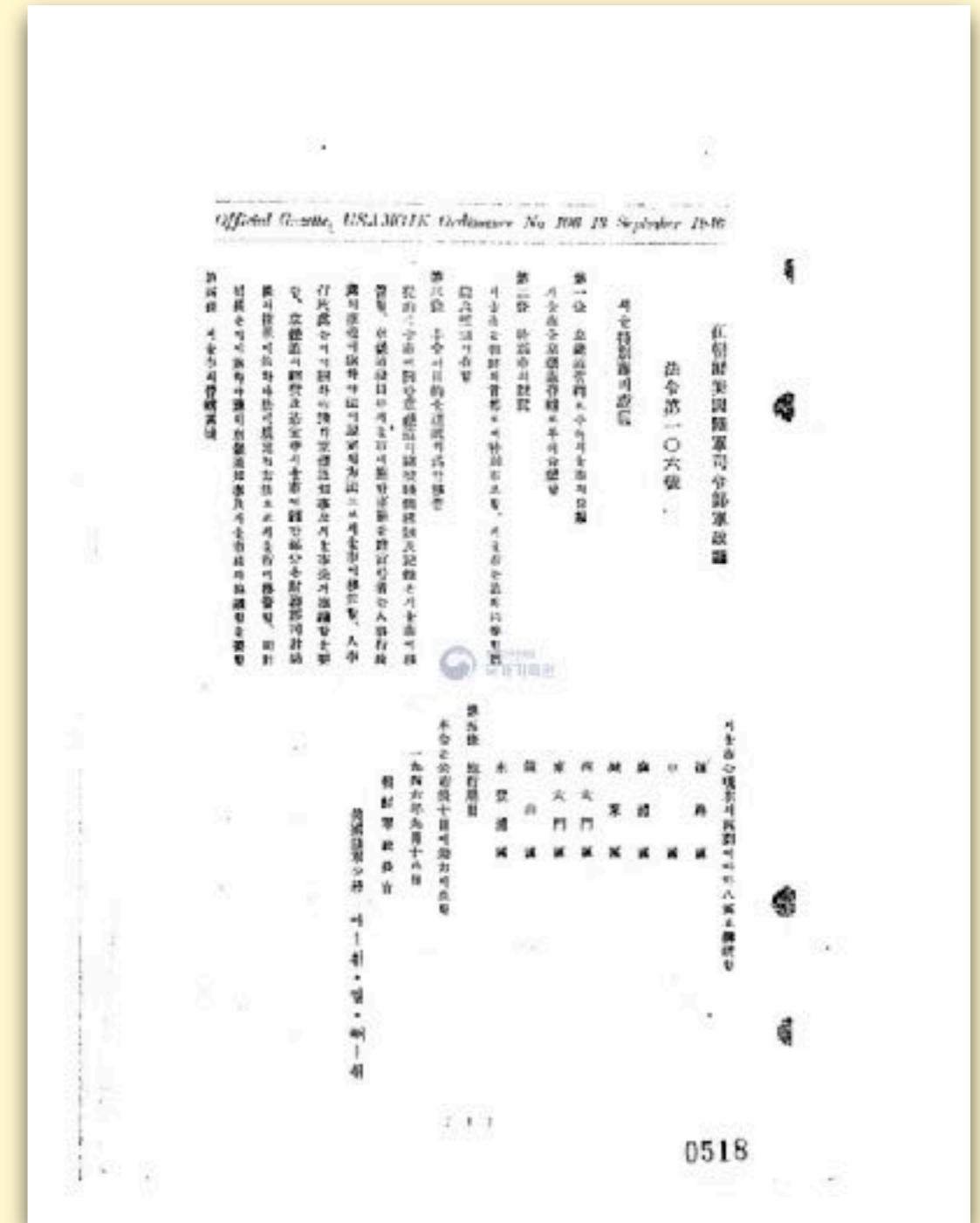
제5조 시행기일

본령은 공포 후 10일에 효력이 발생함

1946년 9월 18일

조선군정장관

미군 육군소장 아처 러취



"서울특별시의 설치"(1946/9/18)
<미군정청 관보>

서울특별시 기구의 설치

서울특별시의 설치(1946/9/28)

- 서울특별자치시로 개칭된 상황.
서울시는 정명 개정(10/2) 이후인 10/7 서울시로 정식개칭.
- 기구 개혁
 - 1) 부시장제의 실시
 - 2) 서울시 운영기구를 부시장 아래 7부, 6국, 1처, 4회로 기획
- 서울 시내 가옥 및 기타 건축물을 개축하려면 소방국의 허가 획득
- 시내 각 대학 및 사범학교, 전문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는 전부 시 교육회의 관리 경여 아래
- 보건위생부와 후생부의 구분
 - 1) 보건위생부: 공중보건시설, 임시진찰소, 병원 등의 유지 경영
 - 2) 후생부: 구제, 후생, 이재민, 고아원, 빈곤자 부조 담당
- 상공부
 - 1) 서울시의 공업과 상업 등 생산 부문을 맡아 무역과 시민생활의 주요 물자의 배급통제 업무 담당
 - 2) 청과시장 감독

특별시 승격 이후

- 경기도에서 취급하던 서울시에 관한 행정사무 일체를 이관받기 시작
- 총무부 소속 재무, 학무, 산업경제 부서를 재무국, 학무국, 상공국으로 승격
- 세입 규모도 기존의 도세 중 30% 정도에서 70%가량으로 확대

정명 개정(1946/10/2, 조선일보)

- "이번 특별시로 승격한 서울시의 '정명' 개정에 관하여 시청에서는 그동안 각 정회대표와 사계의권위 황의동, 윤백남 제씨를 초청하여 심중토의를 한 후 지난 2일부 서울시 고시로 개정 정명을 발표하였다." (실질적으로 10/1부터 변경되었음.)
- "개정취지는 대체로 합방 이전의 명칭을 채택하였고, 혹은 위인명장을 기념하여 그 이름을 쓴 곳도 있으며, 정은동으로, 정목은 가로 고치었다."

경찰서명 개정(1947/2/6, 동아일보)

- 수도관구 경찰서에서는 시내 정동명이 개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전동명을 사용하여 왔는데, 일일부로 개정된 정명에 의거하여 경찰서 중에서는 전 본정서만을 고쳐 새롭히 중부경찰서로 부르고, 남저 | 경찰서는 종래 명칭 그대로 사용하기로 되고, 각 관할 파출소의 명칭은 개정된 동명으로 변경되었다.

서울특별시 기구의 설치

서울시 현장 수여식 (1946/11/21)

- 기구 개편 및 확충의 법적 근거인 법령 제 106호 <서울특별시의 설치> 공포 이후, 미군정은 1946년 11월 21일 10시 서울중학교에서 <서울시 현장> 공포식 및 수여식 행사를 실시함.
- 경성부를 서울시라 칭하고, 특별자유시로 함.
- 기념행사
 - 1) 운동경기(축구, 농구) - 서울운동장
 - 2) 영화, 관현악 - 국제처장
 - 3) 기념마크 도안 수집
 - 4) 시립의료기관의 무료 개방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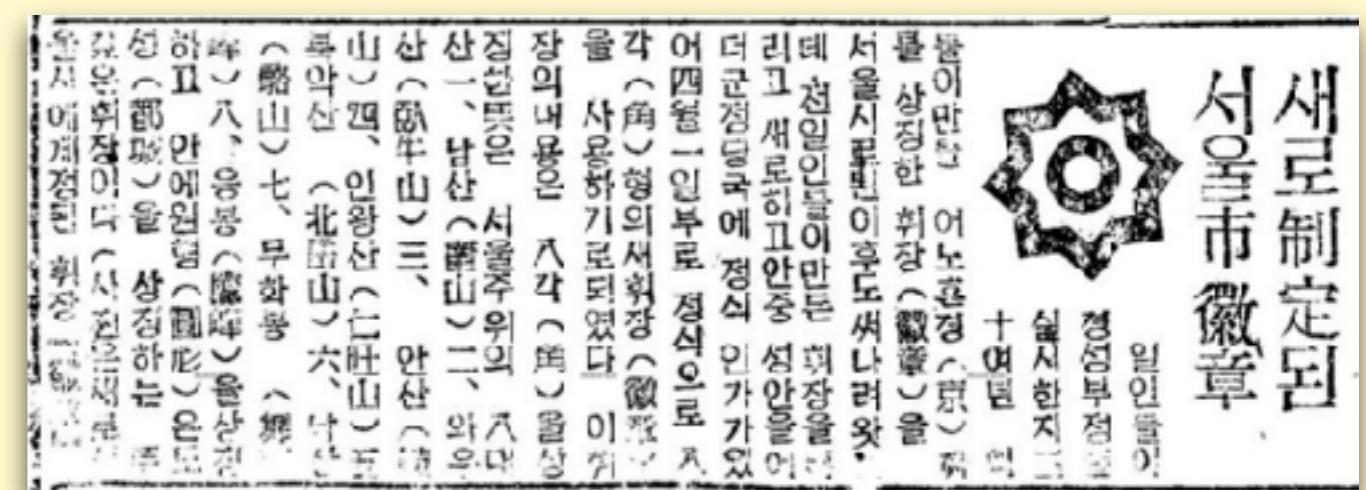
- "식장에는 하지 중장대리, 브라운 소장군정장관 대리, 헬믹 대장, 조미 양 시장 등을 비롯하여 수백명 관민이 모인 가운데 열시 정각 고려관현악단의 웅장한 진악으로 개회되었다. 조미 양 국가가 입장하자 미인 시장 윌슨 중좌와 시장 김형민 씨의 기쁨에 넘치는 식사가 있었고, 곧 이어서 헬믹 대장으로부터 김 시장에게 현장을 수교하였다. 때는 11시 정각, 이로서 서울은 명실공히 특별자유시가 된 것이다."

(1946/11/22 경향신문)



"서울특별시 휘장(마-크) 현상모집요령"

1946/11/20 <동아일보>



"새로 제정된 서울시 휘장"

1947/4/3 <동아일보>

다시, 어쩌다 특별자유시 혹은 특별시가 되었나

1946년 11월 19일,

- 월슨은 <서울시 헌장>의 의미를 이렇게 말함.

“이번 헌장은 민주주의적 조선임시정권 수립의 선구자로서

동양 최초의 민주주의적 시헌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 그
근본정신은 성문화된 헌장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 직원의 행동을 엄격히 규정하는 데 있
다. 가령 이 헌장에 중요항목으로 되어 있는 시회로 말하더
라도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선정된 위원회로서 구성되는 만
큼 그 결의는 결국 **시민의 자유스러운 의사의 반영일진대**
시장은 물론이요 하지중장이라도 하등 간섭을 못할 것이

다. 이러한 사명을 가진 특별시 헌장이 21일을 기하여 시민
에게 공포하는 것이니 시민제위는 이것이 우리의 헌장이라
는 의미에서 언론기관 기타 모든 방법을 통하여 한 조목 한
조목씩 철저히 검토하여 가장 선미로운 헌장이 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다시 말하자면 서울시에 관한 모든 합법적 사
항은 서울 시민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기쁨과 책임을 이 헌
장을 통하여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1949/11/4 <지방자치법>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로 개칭.

전쟁은 서울에
무얼 남겼는가



전쟁과 인명피해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인명피해

- 국군과 UN군을 포함한 18만 명 전사
- 국군 부상자 45만 명, UN군 부상자 10만 명
- 국군 포로 8,343명(송환 포로), UN군 포로 5,817명(송환 포로)
- 민간인 99만 명과 경찰관 1만 여 명의 희생
- 북한군 사망 54만 명 등 남/북 행방불명/실종자 1백만 명
- 전쟁고아 10만여 명(남한 전체)

피난가지 못한 서울 사람들

- 서울 내 20만여 명(전쟁 난민, 전쟁 포로, 전쟁 미망인 등)

서울 사람들의 피해

- 1949년, 1,418,025명 → 1950년 1,693,224명 → **1951년 648,432명** → **1952년 716,865명** → 1953년 1,010,416명 → 1954년 1,242,880명
- 전쟁 전 주택은 19만 동(무허가건물은 3만 동 내외). 여기서 3만 5천 동은 완전히 잿더미가 됐고, 반 넘게 불이 타서 개축되지 않으면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된 것이 2만개 동.

- “서울역은 내부가 완전히 불타버렸고, 용산역과 철도국, 청량리역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으며, 충무로 입구에 위치한 중앙우체국은 벽면만 남아 있었다. 각급 학교교실 4,500개가 불탔고 온전하게 남은 파출소는 거의 없었다. 561개의 공장이 파괴되어 운행이 중단되었고 한강 인도교를 비롯하여 48개의 교량이 파괴되어 교통은 거의 마비되었다. 폐허라는 말로밖에는 다른 표현을 할 수 없게 된 거리에는 수많은 전쟁고아가 방치되어 있었고, 수천의 여인이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손정목, 2003, 11~12쪽).”

- “분하다 못해 생각할수록 억울한 것은 일사후퇴 때 대구나 부산으로 멀찌가니 피난 가서 정부가 환도할 때까지는 절대 안 움직일 태세로 자리 잡고 사는 이들은, 서울 쪽정이들이 북으로 남으로 끌려 다닌다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피난살이의 고달픔이 유행 가락에 매달려 천 년을 끓어 댄대도 어찌 서울살이의 서러움에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왜 그렇게 억울한지 몰랐다. 부러웠기 때문일 것이다.” - 박완서, 2005,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지식하우스.





“6·25사변잔흔서울시파괴1”, 1975, <6.25사변잔흔및서울시파괴-사진복사>(관리번호: CET0035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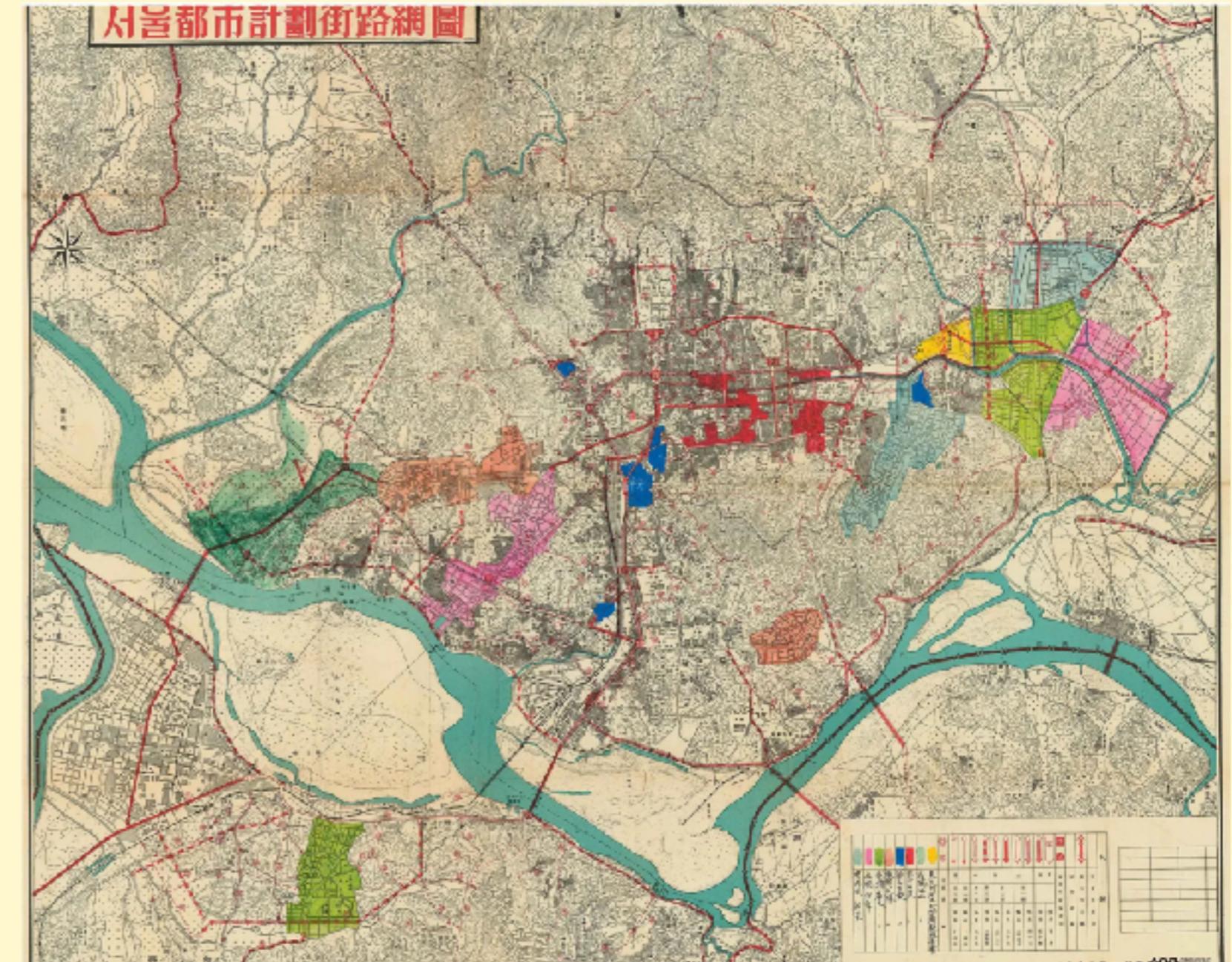




전쟁 이후 도시재건 계획

시가지정리

- 1952년 도시재건계획(전재부흥계획)의 수립. 1934년의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바탕을 두었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과 도로 확장계획, 용도지역계획 등을 수립한 서울 도시계획의 효시.
- 시가지정리는 전쟁피해가 심한 도심지역과 주요 간선가로변의 퇴락한 건축물을 재건하기 위한 일종의 재개발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방법을 적용하여 총 19개 지구 30개동 (약 1.6km²)에 걸쳐 시행되었다.
-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서>는 1960년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제작한 도시계획 관련 지도. 1952년 수립된 도시재건계획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1952년 이후의 추진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서(1960)
소장: 서울역사박물관

전쟁과 쓰레기 처리

전적지정리자

- “1952년 2월 11일에 당시 서울에 살고 있던 주민에게 시민증이 발급되었다 … 시민 중 영등포구 7만 4,458명을 빼면 강북 시민은 24만 7천 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전부가 노약자 아니면 여자들이었고, 그것도 젊은 여자는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시가지의 잔해, 콘크리트와 벽돌조각, 흙더미, 뒤엉킨 전신주 등을 제거하고 운반할 수는 없었다. 궁리 끝에 생각해낸 것이 **강변나루터에서 한강 도강을 기다리는 무리들 중에서 힘끼나 쓸 만한 사람을 골라 도강의 시켜 국민반 단위로 묶어 구청장 책임 아래 전재지 정리를 한다는 것**이었다. … 1952년 2월 5일자로 청소업무 일체를 구청으로 이관했다(정식이관은 1953년 2월 13일자 예규). 그때 선발된 자들에게는 ‘서울 전적지정리자’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각 구청 청소 담당 책임자 인솔 하에 한강을 건넜다(손정목, 2003, 102-103쪽).”
 - “한 개 또는 두 개 구에 월요일-토요일까지 일주일씩 배당한 것을 보면 이때 ‘전적지 정리’ 즉 ‘노임 없는 청소인부’로 서울에 들어온 자수는 결코 적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지만, 그 수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손정목, 2003, 102-103쪽).”
 - “피해적지 정리작업은 국민반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동원 실시되어 총면적 804,870평을 정리했다. 동원된 인원수는 국민반원 218,353명, 의용소방대원 6,603명이었다.”



“오는 15일(1952년 9월 15일)부터 착수하게 된
서울전재적지정리에 대하여 아직 서울에 입경하지 않고
서울에 피해적지를 가진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서울에 입경이 허가될 것이라고 한다.

중구 9월 8일-9월 13일, 종로 9월 15-9월 20일, 용산/마포 9월 22-9월 27일, 남대문/성동 9월 27-10월 4일, 동대문/성북 10월 6-10월 11일, 영등포 10월 12일-10월 18일”

“전적지정리자 입경일자를 결정”, 1952년 9월 5일, <동아일보>

전쟁과 똥오줌 처리

해방 후

- 해방 후 서울의 상황은 “불미(不美)”한 상태였다. 똥 오줌으로부터 퍼지는 냄새와 쌓인 겉보습도 좋지 않았다. 더구나 미국과 일본에서 생활하다 해방을 맞아 돌아온 사람들은 서울의 ‘위생’문제를 짚으며 시가 청소할 것을 요구했다. 1947년, 용산구와 마포구, 성동구, 중구에서 “대행기관을 계약해 … 분뇨를 처리케 하는 동시에 분뇨판매권을 넘겨” 주며, “구청에서 처리 할라면 하로(하루) **한 마차에 600원 가량 들지만 대행기관더러 시키면 2백원**, 즉, 구민 부담이 평균(평균) 3-40원 밖에 안될 분 않이라(아니라), 대행인은 하로(하루)에 동원되는 사오십대의 마차”가 있으며, “**분뇨(가 자연스레) … 시외농촌에 파는 이운(이윤)을 올려 능률적이라 했다.** 이처럼 똥오줌을 치는 일은 시당국의 행정 가운데서 꽤 큰 이권사업이었다.
- 그렇지만 이 ‘대행인’만 똥오줌을 쳐내는 건 아니었다. 대행인이 맡지 않는 지역과 시간엔 인근의 농민들이 서울로 들어와 똥오줌을 쳤다. 1950년 4월 1일부터 금지됐다. 대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를 제외한 시간에 계약한 업자만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월 2회로 동·통·반을 순회하여 작업하리라는 바 동장은 인분 수거 여부를 조사하고 수거제(收去濟)의 검인(檢印)을 하게” 했다. 동시에 종로구·한강인도·이북간선·충정로가 일대에는 똥오줌을 운반하는 마차의 출입이 금지됐다.

전쟁 이후

- 전쟁 이후 상황은 뒤바뀌었다. 전쟁으로 인해 위탁이 중지됐고, 전쟁 중에는 서울시가 트럭 10대를 개조해 직접 처리했다. 휴전이 이뤄지기 직전, 서울시는 구청이 직접 처리하던 것을 민간업체에게 대행을 맡겼다. 1953년, 10월 15일부터 서울시내의 분뇨는 ‘대한청소협회’라는 민간업체가 도맡았다. 그렇지만 같은 해, 11월까지 “시 당국의 트럭 23대와 우마차 50대”로 “분뇨 15,044석”을 반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능력이 제한적이었기에 문제를 모두 해결했는지는 미지수다. 그렇기에 1950년 금지된 농민의 똥오줌 수거는 불법적이지만 암암리에 필요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언론에서의 단속 사례를 볼 때 간헐적으로 이뤄졌다.
- 1956년을 기준으로, 분뇨 처리를 대행한 민간업체는 시민들로부터 한 지게당 30환을 받았는데, 이렇게 트럭 한 차당 2,400환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 그리고 이 분뇨를 비료장수들에게 매각해 매년 3,000환-5,000환을 벌었다. 즉, 매일같이 수수료를 받고, 일년에 몇 차례 분뇨를 매각해 돈을 벌었다. 그리고 경찰서에 일종의 운행대금을 지급했고, 이를 제외한 비용으로 인건비와 차량수선비, 그밖의 잡비를 지불했다.

발전하는 서울,
소외당하는 서울

서울의 찬가(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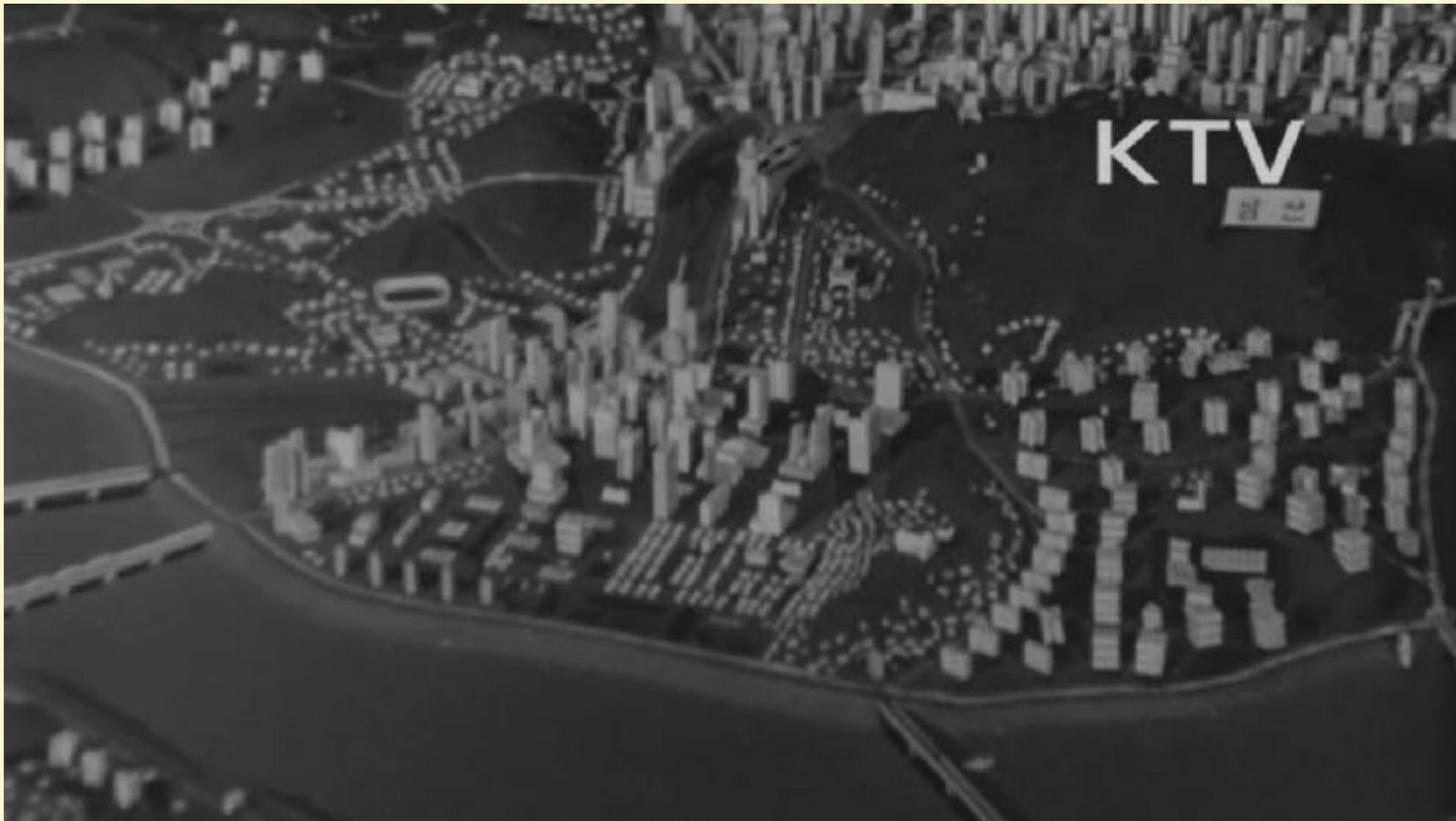
작사/작곡 길옥윤
노래 패티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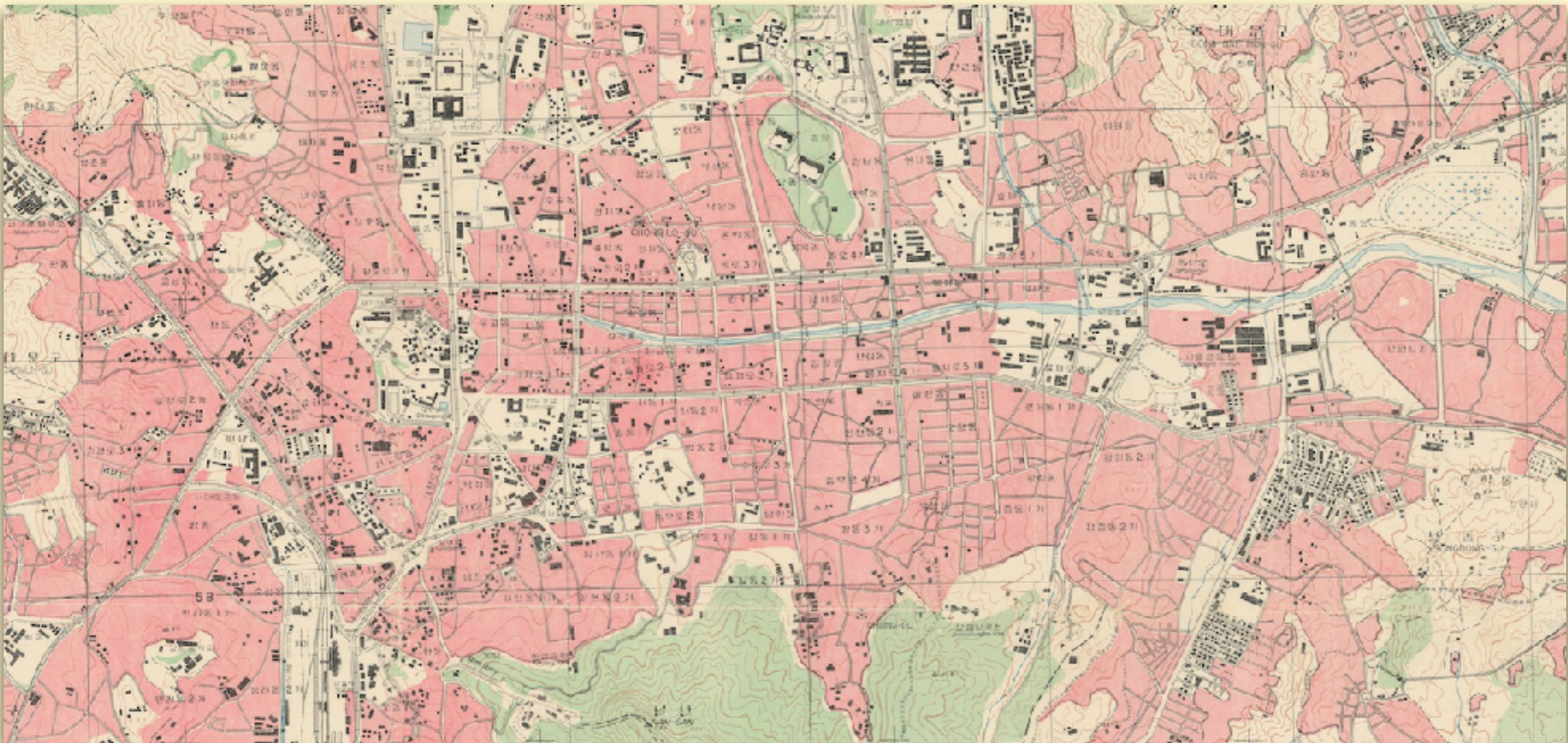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봄이 또 오고 여름이 가고
낙엽은 지고 눈보라쳐도
변함없는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헤어져 멀리 있다 하여도
내 품에 돌아오라 그대여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새서울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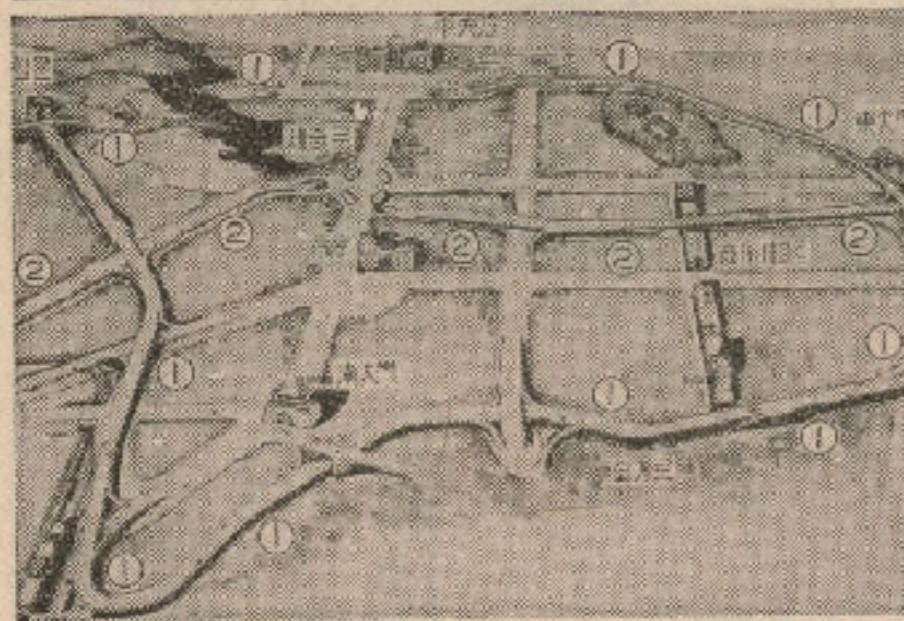
청계천을 중심으로 본 1957년의 도시 서울 도심부

서울특별시 지도 도심부(1957)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13일 길전화서울시장을 7
월부터 전기요금등 관리요
금이 올라도 수도요금율은
금년말까지 인상하지 않겠습
고 나침했다.

서울市內 中心街에 環狀高架고속도로



◆ ①이 제1순환고가도로, ②가 내부순환고가도로

인구의 교통량
재의 서울시내 교통시설이
3년ぶり 저의 마교상대에
마련것이라는 전망수준이
교수도로를 광교동에 확장·
69년말에 종합화 도정이 다
고 설립된다.

서울시내 중심가에 환상 고가 고속도로

1967년 6월 14일, 조선일보

3年 三日畫 으로 建設
遊休地 담보로 市價 30億원 말행
13일 김연옥 서울시장은 3개년 계획으로 공사비 63억원을 투입, 시내 중심부에 20
5ha의 환상고가 고속(環狀高架高速) 도로를 건설하고 그 부수면적을 위
한 강변의 우유지 등을 판교로 시체(市體) 30억원(약 1천만달러)을 날렸을 계획
이라고 밝혔다.

13일 김한숙총사장이 3000만원의 공사비 600만원을 더 지급해 2000만원을 더 지급해 5000만원의 환상고가 고속(庚戌高麗高速) 도로를 건설하고자 그 예산액을 3000만원으로 한강변의 우유지동을 관리로 시체(市體) 30억원(약 1천만화폐)을 날카롭게 지급하고 이하고 말았다.

An aerial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complex highway interchange. The image shows a multi-level highway system with several ramps and overpasses. The roads are light-colored, contrasting with the darker ground below. The interchange is a dense network of curves and straightaways, typical of a major urban highway system. The surrounding area appears to be a mix of developed land and possibly some vegetation or smaller structures. The perspective is from above, looking down at the intricate road network.

三、高架道路 개통

【사이곤】=二十二
日 朴寅燮 崔時仲
특파원 주월한국기획
분사원단十六명을 비롯하여

訪越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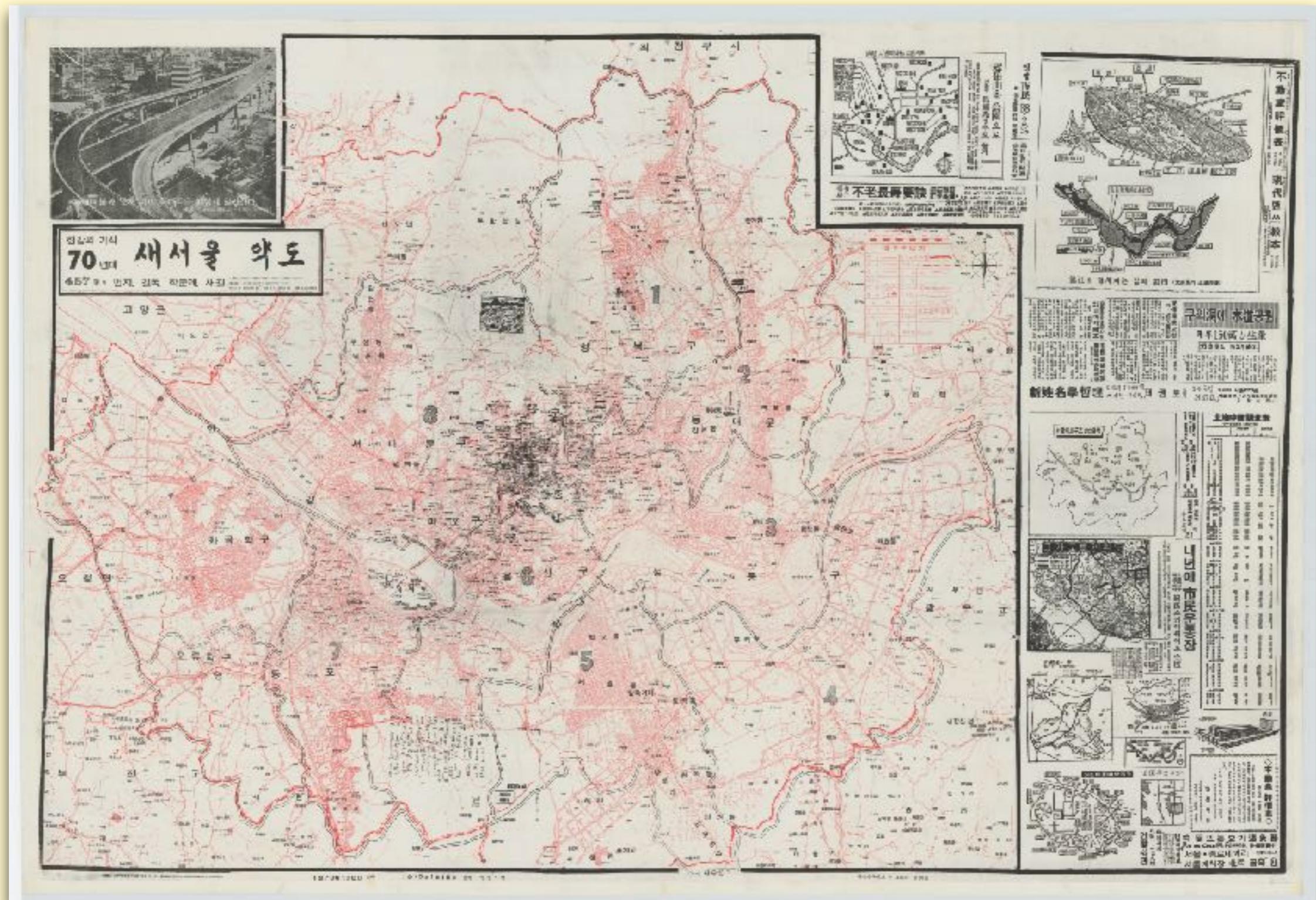
三

삼일고가도로 개통

1969년 3월 22일,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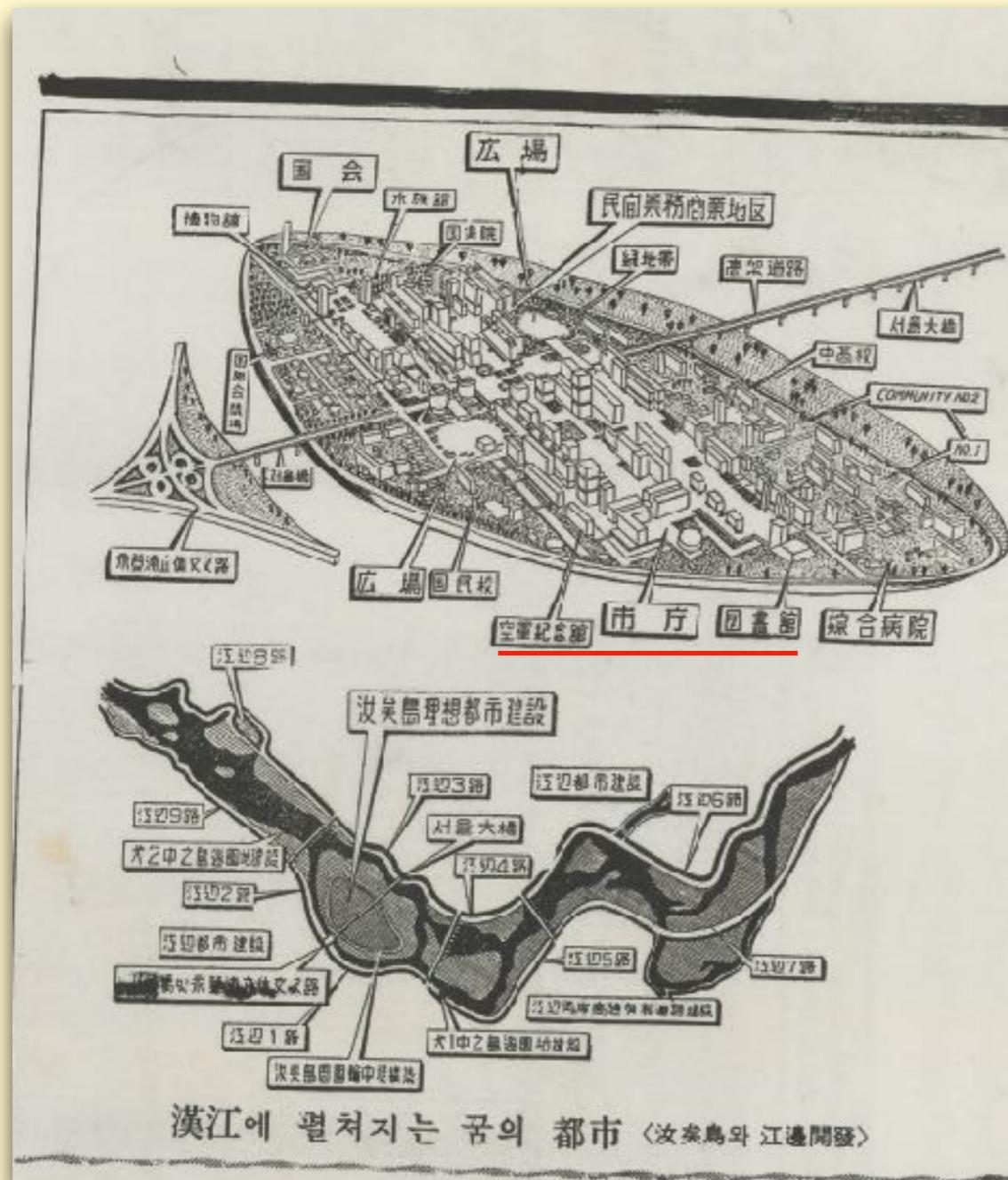
朴大統領참석 길이 三、七五〇m. 폭 16m

선임되었고 축도로
기종
식이 1111년 오전 1시
정원대주재파 술호(主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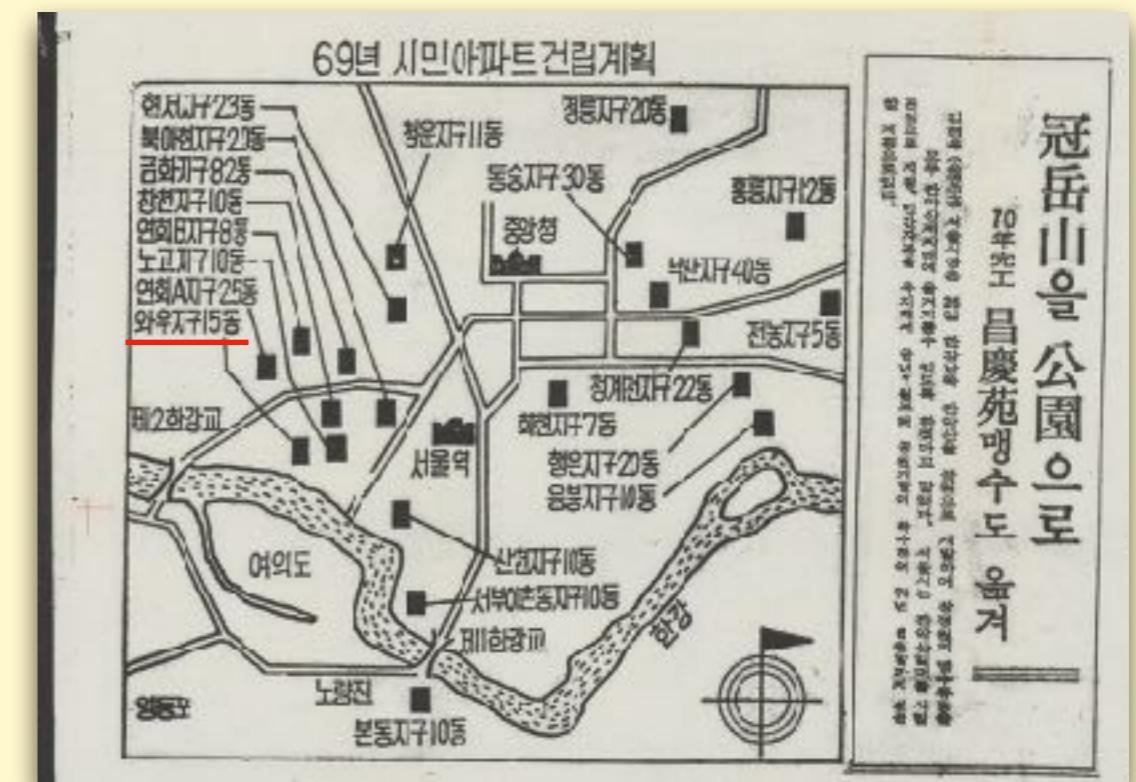


새서울 약도(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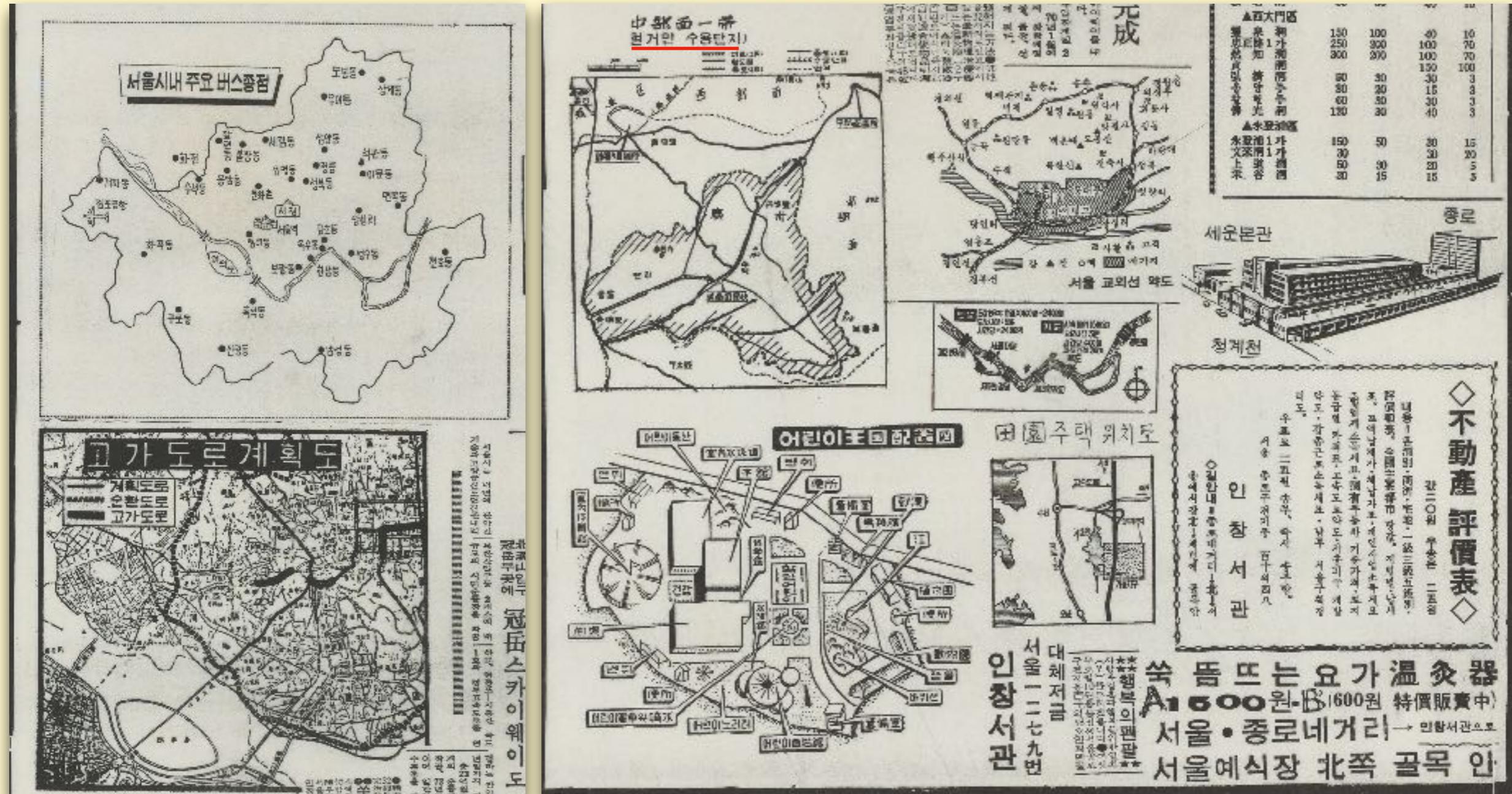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여의도(개발계획도)와 한강개발



1969년 시민아파트 건립계획





수학여행(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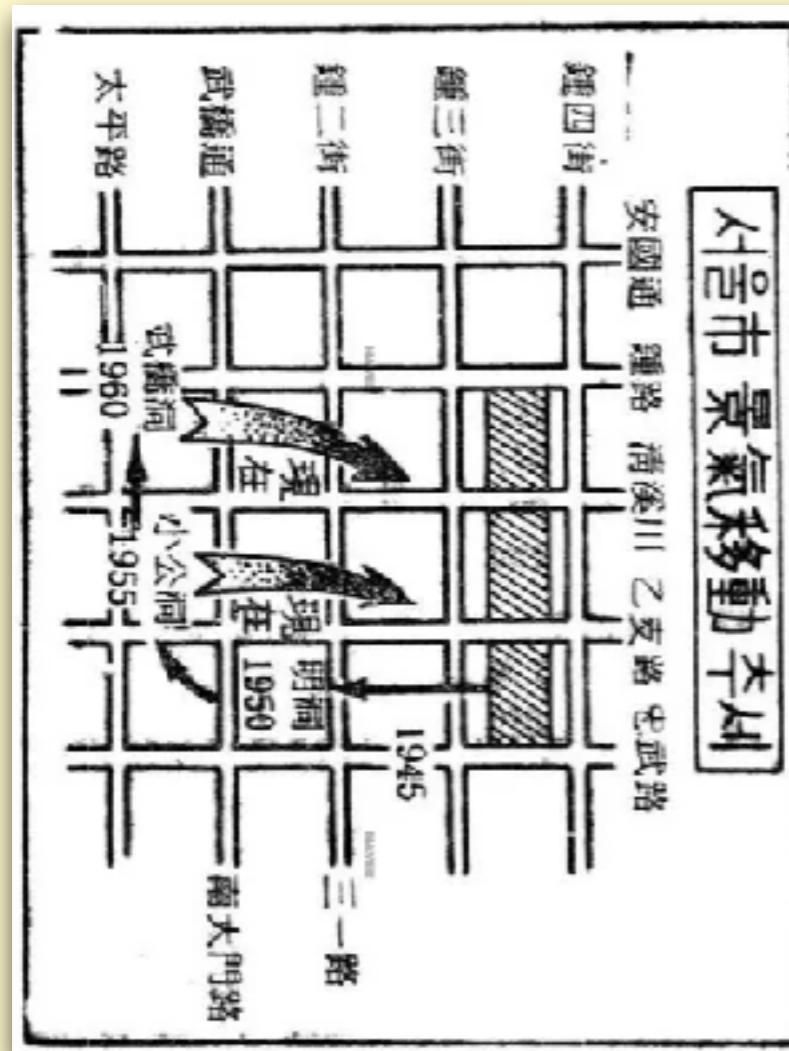
#유현목 #구봉서 #좌충우돌 서울여행

청계천변이라는 대형상권의 형성과 쇠퇴

- "청계천변의 상권이 가장 활성화된 시기는 1970년대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말이 되면 청계천변을 비롯한 중구의 상권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준이다. 당시 전국 도매거래액이 2조4천4백87억원으로, 중구는 7천8백83억 원으로 32.2%를 차지했고, 도산매거래액의 크기가 인천과 울산, 충북 전체의 크기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다. 여기에서 **의약 및 화학제품**이 전국의 19.1%, 서울의 41.7%, **기계류**는 전국의 69.1%, 서울의 78.7%, **건축자재와 금속류, 전기기기** 등의 부문에서 모두 전국의 20-54%, 서울의 35-78%에 달했다. 사실상 중구의 산업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을 지배한 수준이었다(<경향신문> 1978. 1. 23, "상권의 과밀지대: 서울 중구권을 분석한다")
- "서울 을지로3가에서 청계천과 종로 3가를 거쳐 돈화문 앞까지 이르는 상가지대는 분업화된 **자동차병원가**라 할 수 있다. 을지로 입정동 쪽은 **타이어**, 그 맞은 쪽은 8톤 이상 트럭 등 **중장비부속상**, 청계천 쪽은 **엔진의 연소장치, 배관부문**이다. 청계천을 건너가 관수동 쪽은 **컴프레서, 모터 등 기계류**, 장사동 편 중간은 **배터리, 스타트 모터** 등을 취급한다(<매일경제> 1968. 11. 11.)"
- 1987년부터 차례차례 시작된 '용산전자상가', '영등포 당산동 기계부품유통상가', '구로 기계부품유통상가', '고척동 산업용품 상가', '시흥산업용재유통상가', '중앙철재종합상가' 등으로 **분산/이전하기**를 요구받고, 상당수의 업체가 이전했다. 더구나 IMF 외환위기를 지나며 산업구조의 변화가 발생했고, 이 변화는 청계천변의 상권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 제조업의 집중도가 낮아졌고, 서울시의 산업 역시 **3차 산업** 중심으로 재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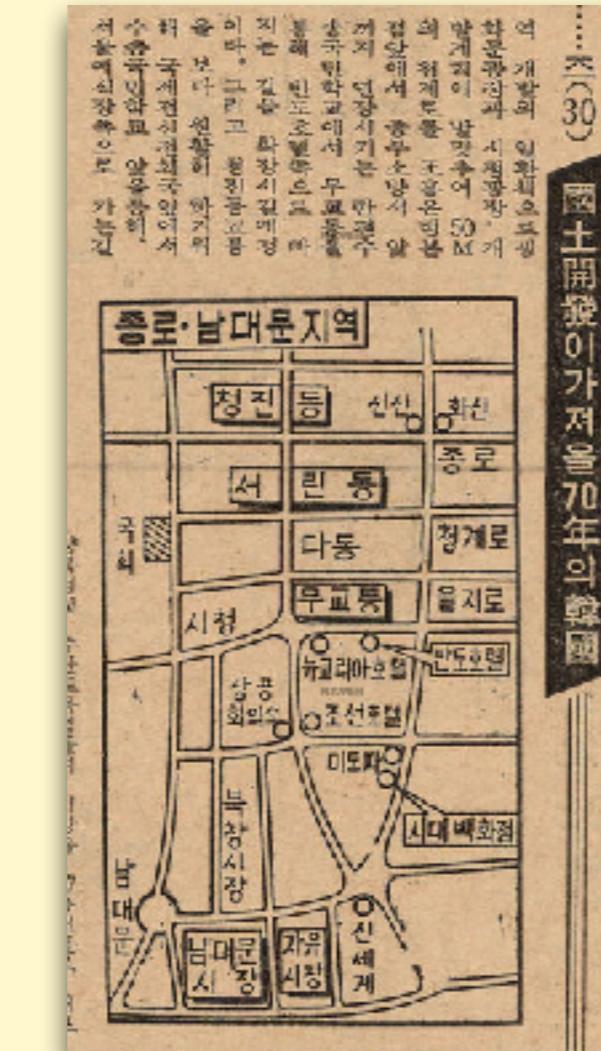


"옛날 장꾼들이 몰렸던
을지로 청계천 종로 3가일대"
<경향신문> 1976. 11. 11. "



"달라질 서울 상가판도"

<매일경제> 1968. 1. 1.



"국토개발이 가져 올 70년의 한국 <8> 서울의 미래상 (7) 남대문로, 충무로, 퇴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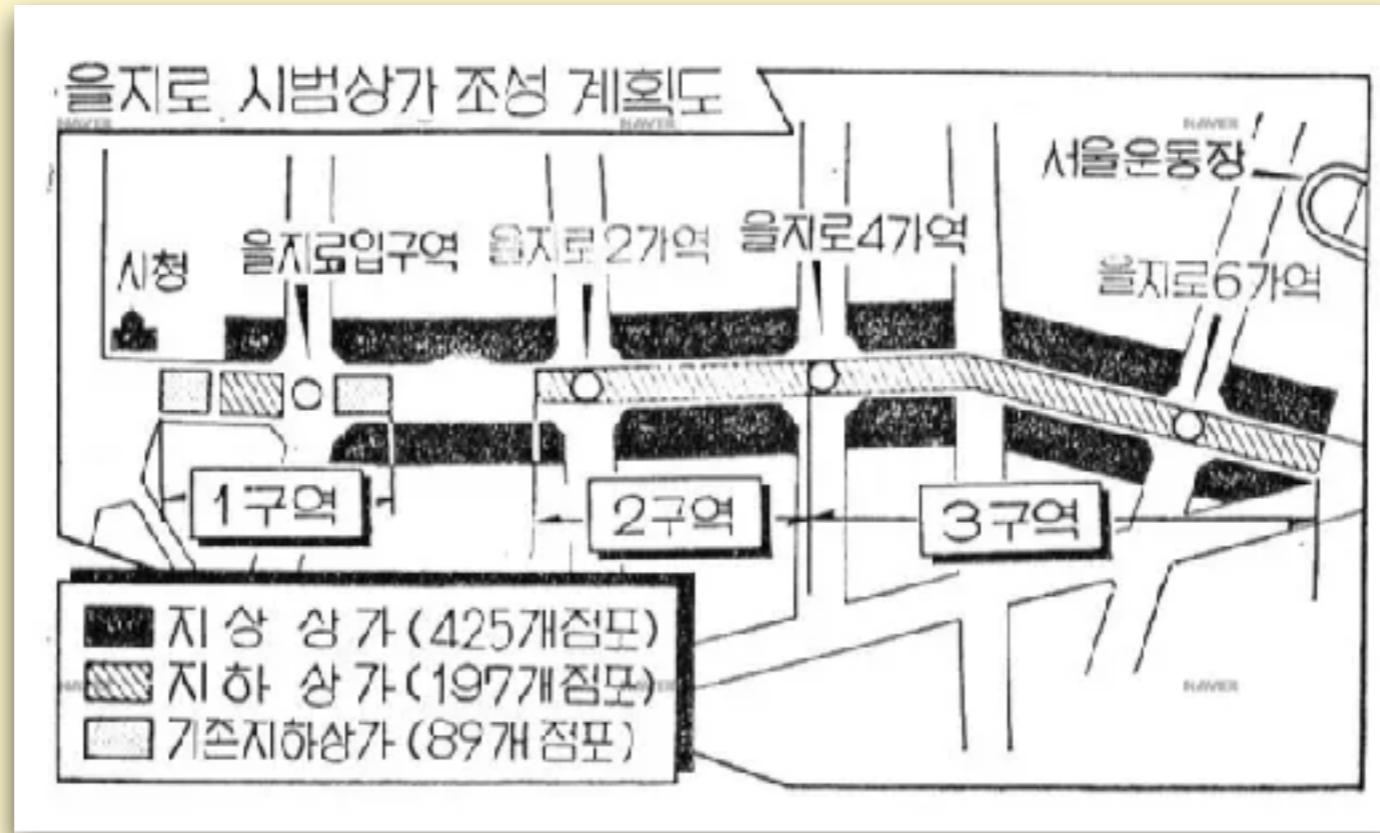
<경향신문> 1968. 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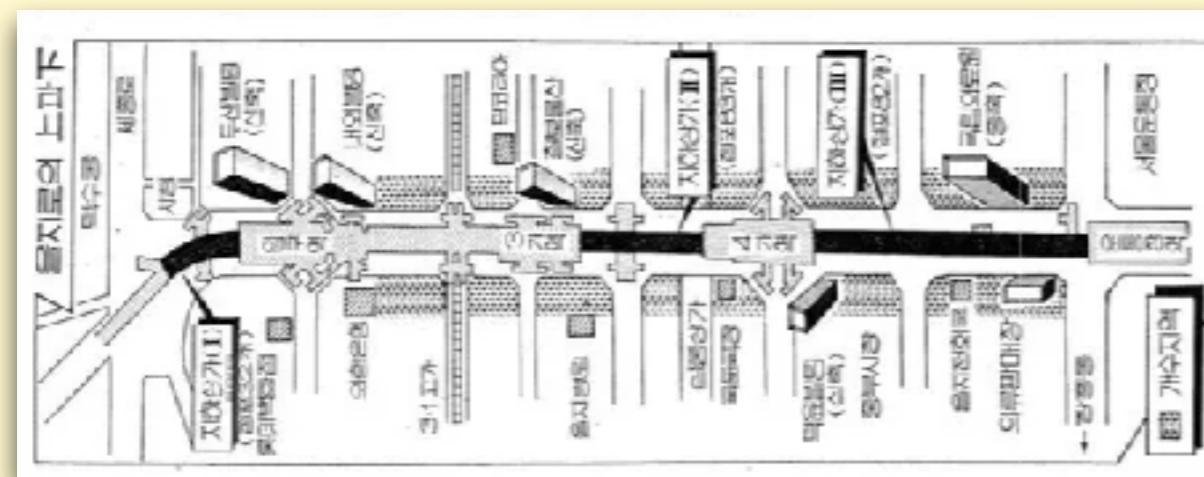
◇청계천 3가에 빽빽이 들어선 공구상가, 국내수요의 33%를 공급하고 있는 이 상가의 이전문제가 최근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청계천3가에 빽빽이 들어선 공구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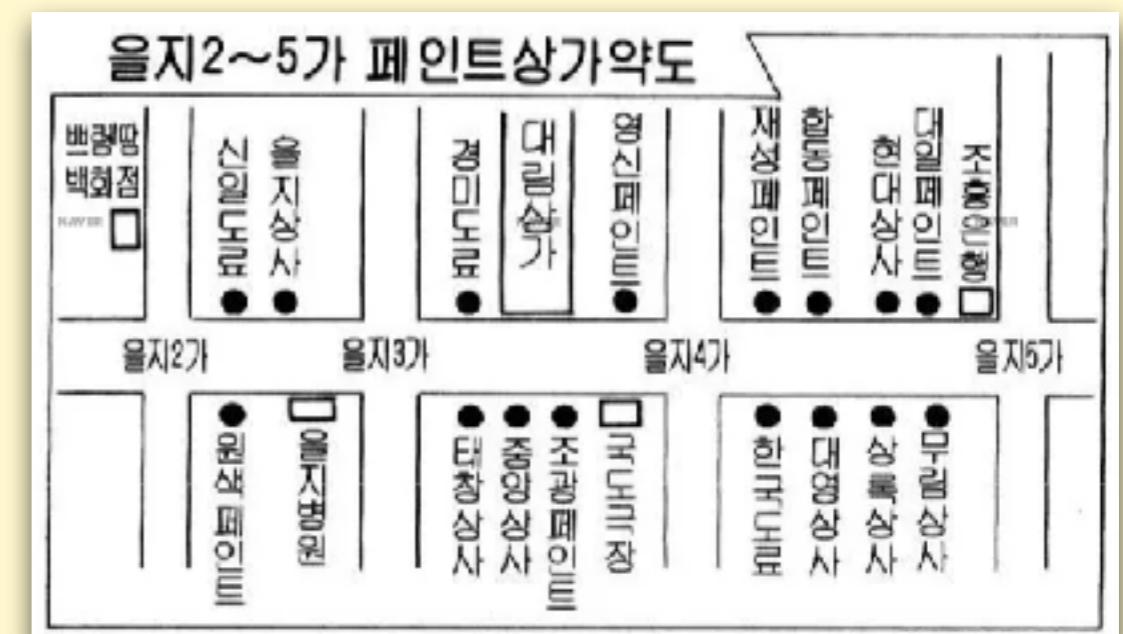
<매일경제> 1983. 8.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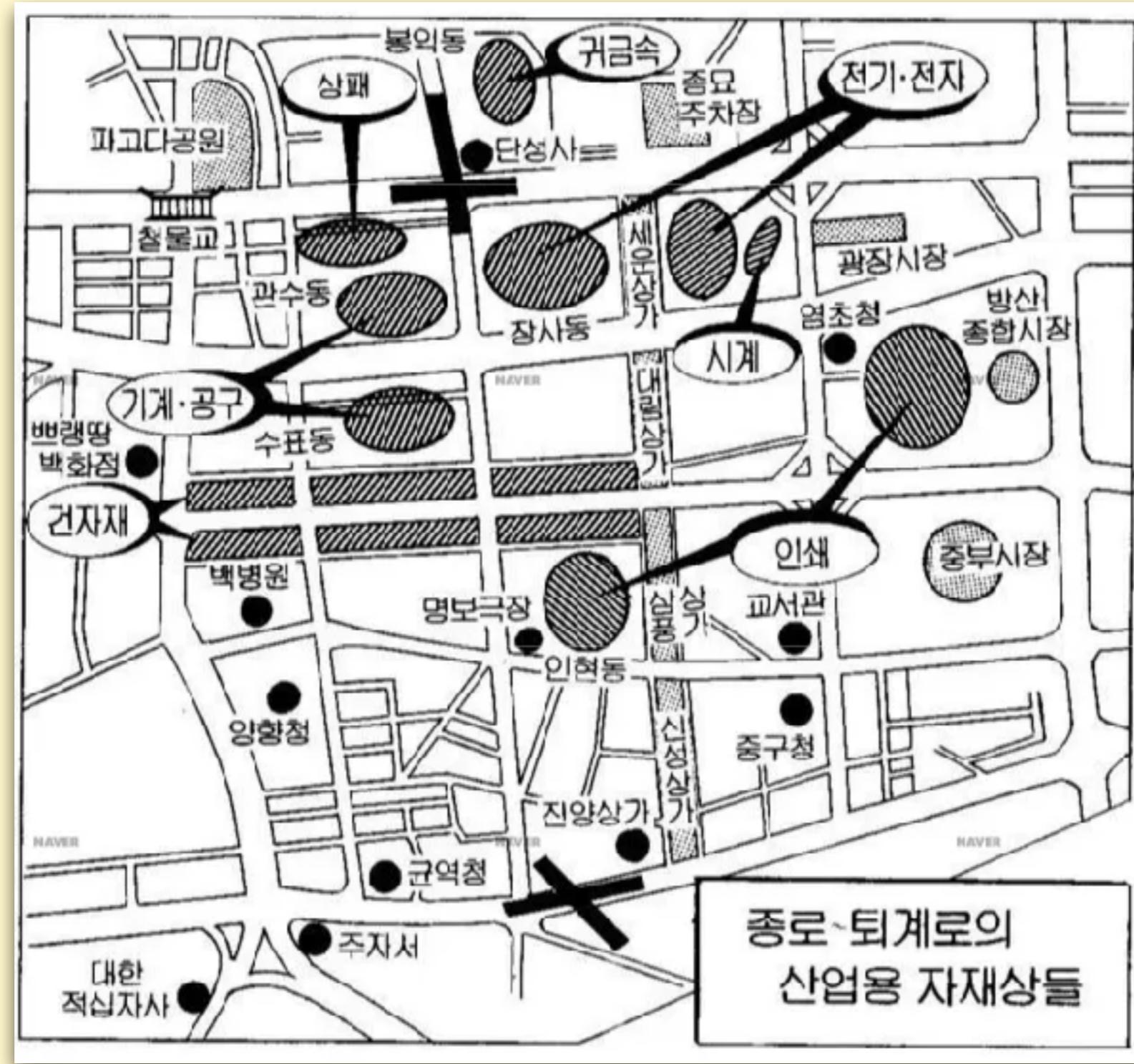
"을지로 시범상가 조성 계획도"
<경향신문> 1983. 8. 27.



“을지로의 상과 하”
<경향신문>, 1983.10.17.



"을지로 페인트상가"
<동아일보>, 1995. 3. 9.



"정도 600년 서울 재발견
<20> 청계천일대 자재시장
<동아일보> 1993. 6. 17.

재개발, 재개발, 재개발

1960년대, 또다른 시작점

- 최초의 서울시 도시계획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서울은 곳곳에 무허가 판자집을 포함한 무질서한 주택이 밀집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환경을 어지럽히는 동시에 사회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량지구는 수없이 있으나 우선 긴급한 곳인 영천 일부, 금호동 일부, 보광동, 서울대학 뒤 산, 공덕동 일대와 해방촌 및 종로3가 지역 등 140만평을 훌털어내고 새로운 주택을 만드는 한편 아담한 아파트를 짓도록 한다(서울시, 1966, 338-339쪽).”

- 당시의 사정은 이랬다.

“서울의 인구는 3백 20만으로 늘어나 뒤떨어진 도시 형성 속에 숨가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서울시민 59만 9백 63가구가 31만 1천 6백 85가구의 주택에 살고 있다. 한집에 평균 9명이 살고 있는 서울은 한 집에 두 가구가 살고 있는 폭으로 전 가구수의 51%가 겨우 집을 갖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49%에 해당하는 26만 4천여개의 집이 모자라지만 해마다 3만 8천 1백 88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주택난 해결은 생각도 못하게 되었다. … 시내의 주택을 형태별로 나누어보면 현대식 30,677, 기와집 155,833, 초가 27,832, 합석집 8,405, 왜식 16,317, 연립주택 10,445, 아파트 354, 겸용 7,128동이 있으며, 이외에도 판잣집 3만4천2백39동, 토굴 2천2백30, 기타 1만8천6백 25동. … 서울인구 중 통계숫자 속에 살지 못하는 부랑인 구도 많다. 서울 한복판 남산 공원 토관 속에서 사는 4백여명의 '집시'들.”

“재개발 지구” 지정, ‘재개발’이라는 용어의 개발

- <도시계획법>(1962)

제2조 (정의) 본법에서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내의 교통, 위생, 보안, 산업, 후생 및 문화에 관한 중요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말한다.

: 도로, 광장, 공항, 주차장, 철도, 궤도, 하천, 운하, 항만, 공원, 수도, 하수도, 운동장, 시장, 학교, 도서관, 유원지, 녹지, 도살장, 묘지, 화장장, 진개 및 오물처리장, 저수지, 방풍시설, 방화시설, 방수시설, 사방시설, 방조시설, 토지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경영,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또는 일단의 불량지구개량에 관한 시설.

- <도시계획법 시행령>(1965)

건설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상 또는 토지이용상 건축물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고도지구를, 항만의 관리운영상 필요할 때에 임항지구를, 공공용건축물을 집중시켜 업무집행에 관한 상호이편을 도모하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업무지구를, 불량지구개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재개발지구를 각각 설정할 수 있다.

25일 시달리 이 지점한 7
개간선도로변의 불량건축물
은 모두 44개 지역에 1만
9천 1백 20동으로 밟혀졌다.
주요간선도로변의 불량지구
의 위치와 불량건축물을 주는
다음과 같다.

◆ 중천교부근 50동	◆ 道峰
동 1백 20동	▲ 서원리 80동
◇ 清涼里 2 隆士간	▲ 휘경동 6백동
	▲ 中浪
川제항 9백동	▲ 망우역 5
백동	▲ 신촌부락 80동
부락 50동	▲ 新内동 1백 20
동	▲ 萬梅국민학교부근 80동
▲ 장거리 50동	▲ 피계원 2
백동	
◇ 城東橋 2 廣壯橋간	
▲ 建國대학입구 3백 60동	
▲ 워커힐입구 2백동	▲ 송신
소부근 80동	▲ 광장교서쪽
3백동	
◇ 龍山 2 始興간	
▲ 解放村(厚岩동) 1천동	
▲ 노랑진수원자역 30동	▲ 韓國車站
입구철도변 1백동	▲ 大方동
액체면 1백 50동	▲ 大方川철
도변 6백 50동	▲ 韓國漆
1백 40동	▲ 萬國타이어부근
2백 80동	▲ 九老동입구 3
백 80동	▲ 九老동철도변 4백
50동	▲ 加里峰동 50동
동 50동	▲ 獄山
◇ 西大門 2 金浦간	
▲ 腹동출장소남쪽 20동	
제2한강교북쪽 30동	▲ 老姑
山 5백동	▲ 阿峴동 7백동
◇ 南山주변	

서울시의 흐자동 세검정
간 도로화장계획에 따라
중의 일부를 25m의 너비로 털
겠다는 서울시의 통보를 받았고
문화재관리국은 25일 하
오 문화재전문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도의하기로 했다.
銀行앞서네다바

불량건축물은 우선 소유자들에게 개수령령을 하여 주민이 자체적으로 개량토록 조치했다. 또한 이미 재개발지구로 선정된 명천지구는 시가제공하는 설계에 따라 지주조합을 결성하여 불량지구개량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동▲梨泰院(의인주재판) 11-1
30
복

44 개지역 萬 9 千동에 改修·철거令

幹線 개설
鐵道 路線
本線 建物
高架 整備

整備

서울도시계획지구(미관지구, 재개발지구) 지정 1966년 2월 7일 기안, 서울기록원 소장

◎건설부고시제2, 819호

서울도시계획 재개발지구를 다음과 같이 설정고
시한다. 관계도서를 서울시청에 배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관계인의 종합에 공한다.

1966년 10월 15일

건설부장관 전 예 용

다 읍

재개발지구설정조서

종로구: 와룡동·원남동·인의동 645,246m² 신설
 · 흥점동·종로3가·종로4
 · 가·묘동 및 예지동 각
 · 1부, 봉익동·장사동일원

중 구: 주교동·산림동·율지로 (195,529평) 간선

 · 3가·율지로4가·초동·도로면적제외
 · 인현동1가·인현동2가·
 · 충무로3가·충무로4가·
 · 충무로5가·필동1가 각

1부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생략)

◎건설부고시제2, 8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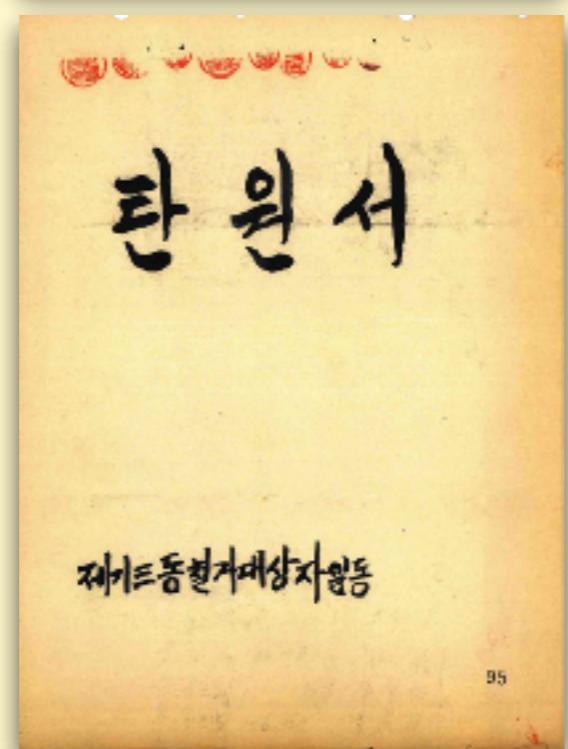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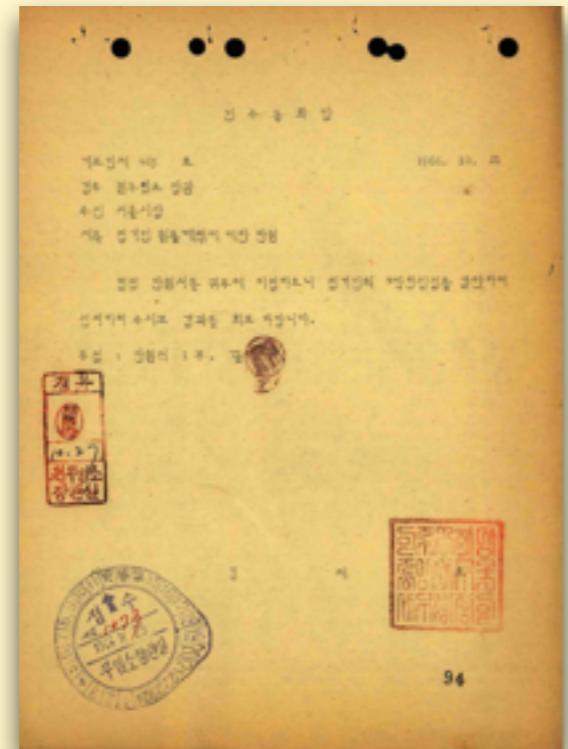
공유수면 배립을 다음과 같이 면허한다.

1966년 10월 17일

건설부장관 전 예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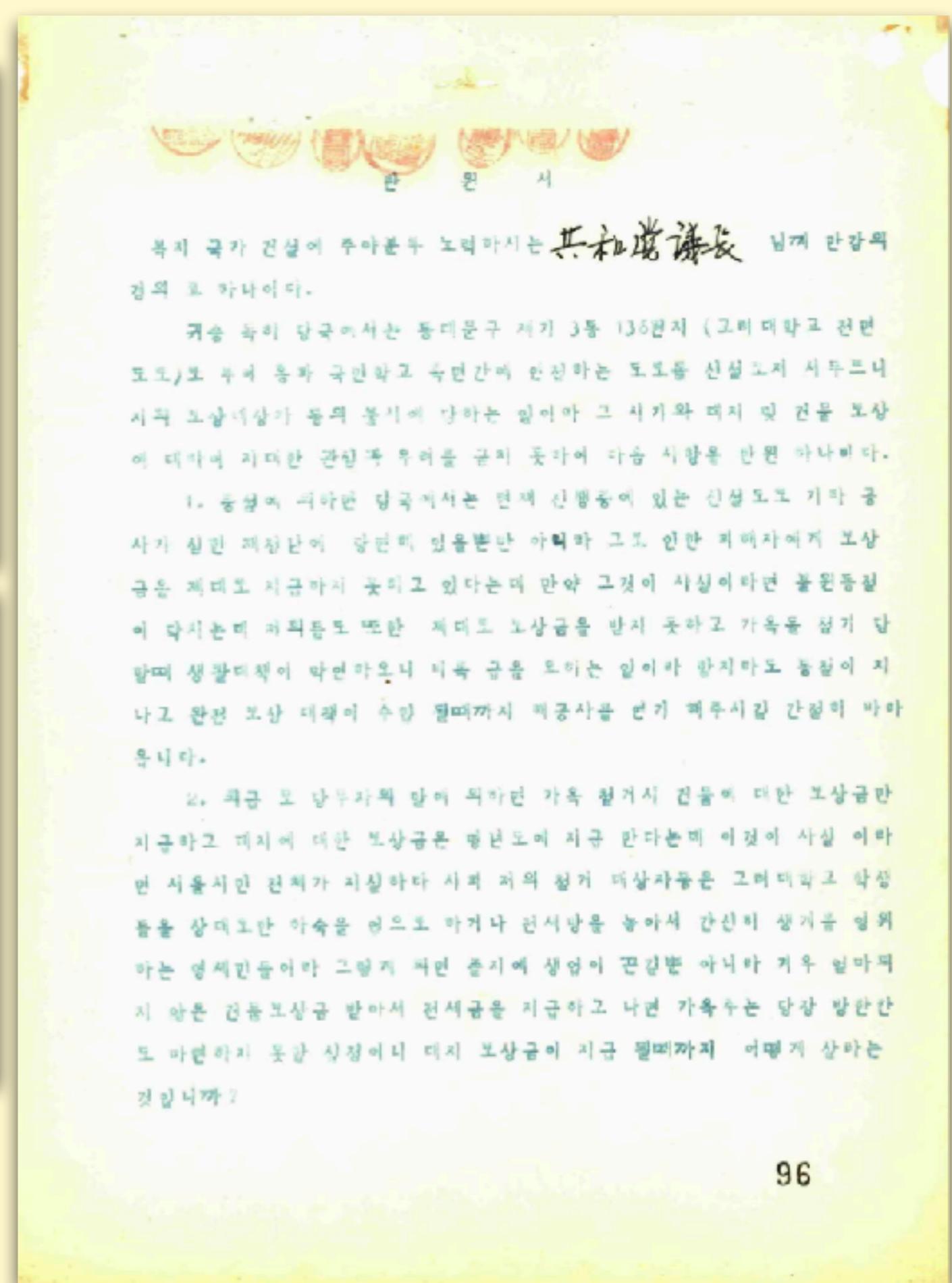
서울도시계획 재개발지구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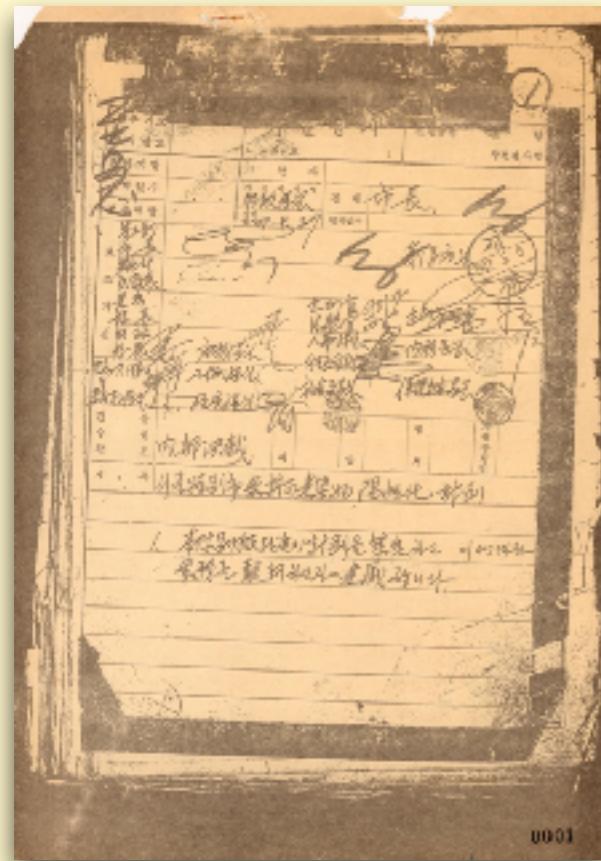
1966년 10월 15일 고시, "관보 4475호", 국가기록원 소장



철거민월동대책에 대한 탄원(민주공화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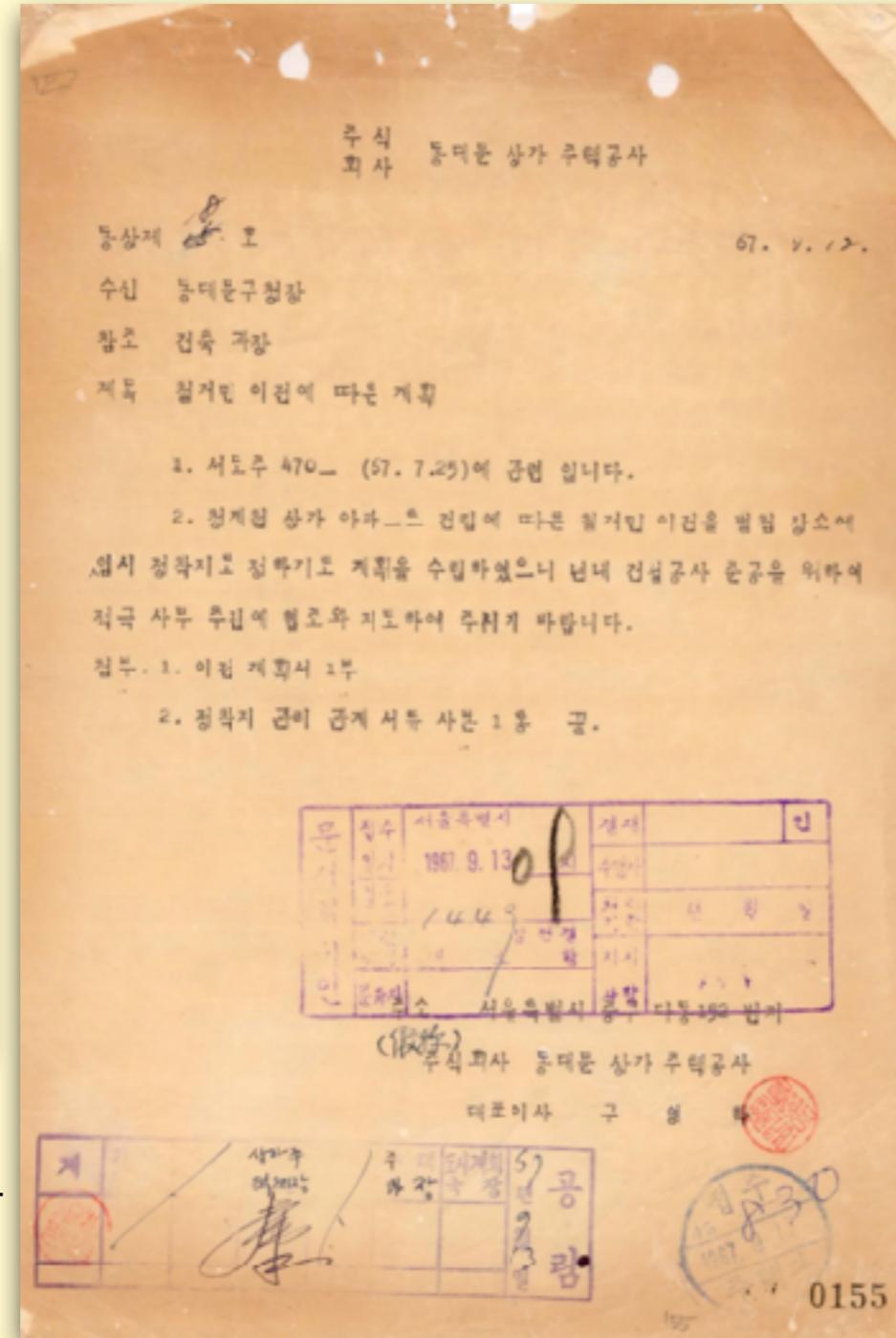
1966년 10월 25일, 서울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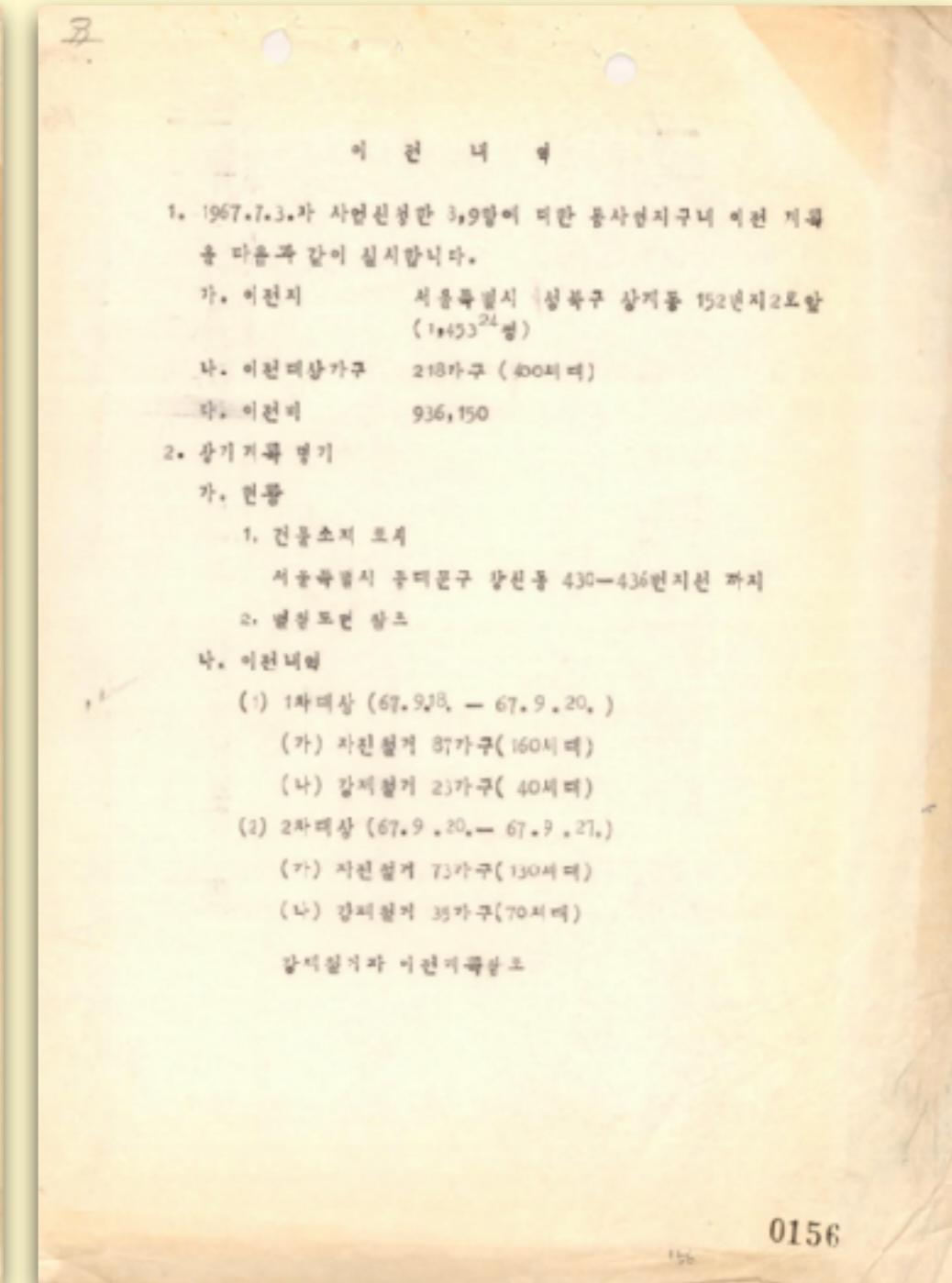


서울무허가건축물양성화계획

1967년 4월 27일. 서울기록원 소장



철거민 이전에 따른 계획 1967년 7월 25일, 서울기록원 소장



발전하는 서울, 소외당하는 서울

천자대상자명단						
제작자명	제작일자	제작장소	제작주체	제작주체	제작주체	비
金元義	7	-	2	0		高부족
李昌烽	7	-	2	0		
徐春鶴	3	-	2	0		
鄭昌川	6	2	2	0		壤
張先奉	7	-	2	0		
玄培佶	4	-	2	0		
丁元伊	6	2	2	0		
痴	40	4	14	7		

무허가건축물철거자료제출

1967년 1월 18일, 서울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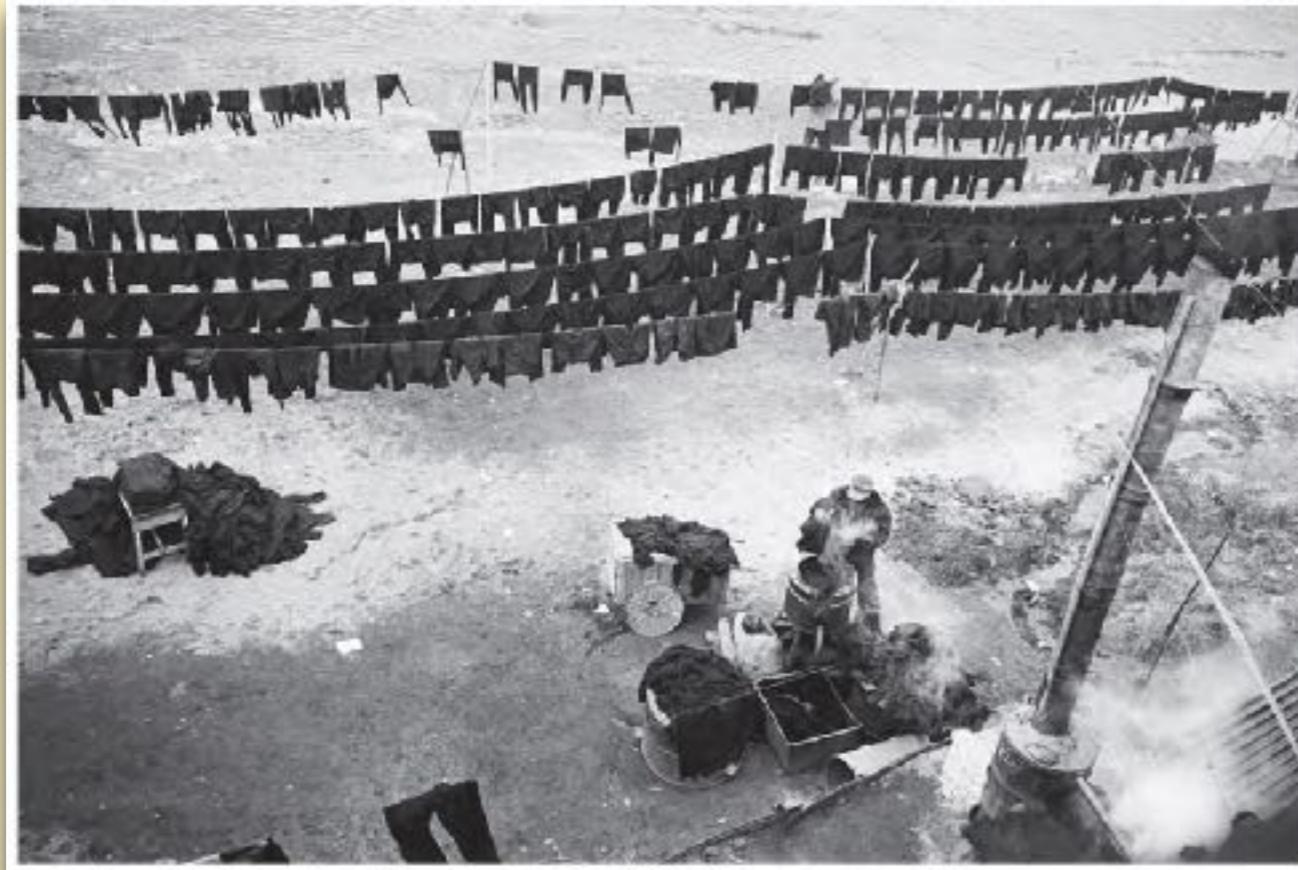
서 충 충 네 시 팔
노심과, 오시기복국 구희설비과, 천설국 흑복과, 주온국 연주과, 흑수과,
전주호국 푸진과, 오자과, 부네과, 오시기복국 주의과, 서예(서예 1-9)

도심부 재개발과 판자촌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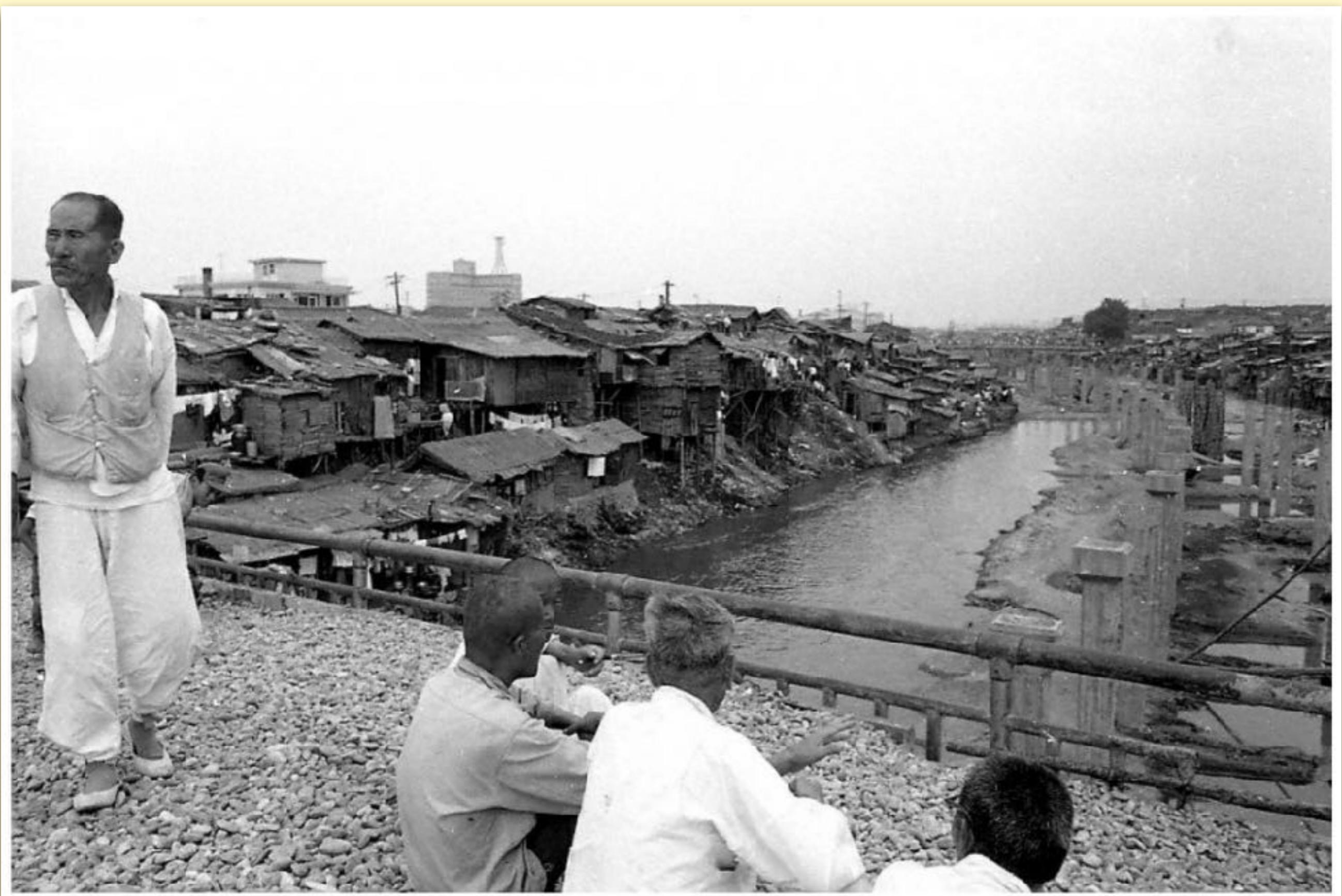


1960

발전하는 서울, 소외당하는 서울



옷 염색(1958) 한영수; 만리동(1959) 한영수; (미상)홍순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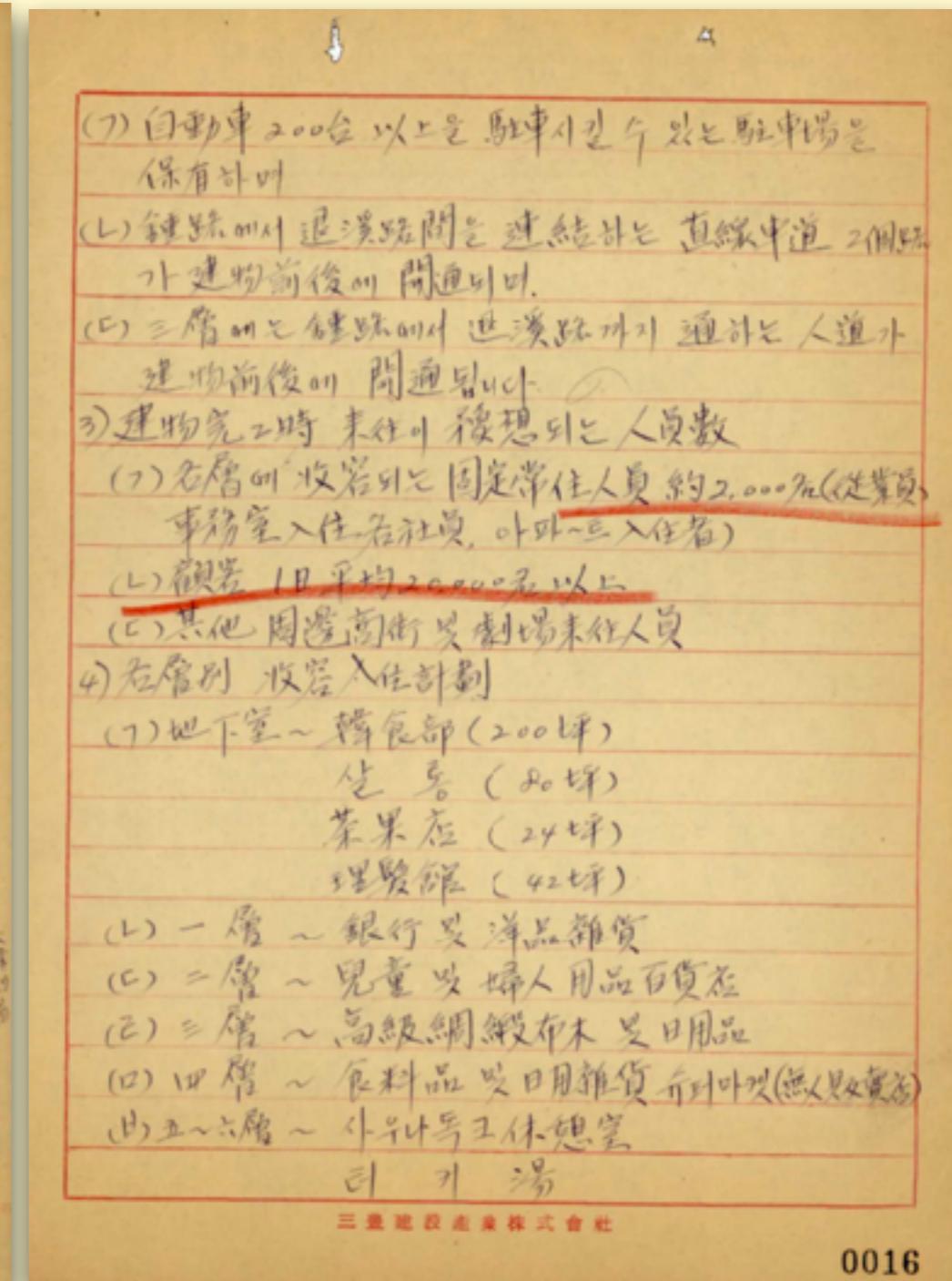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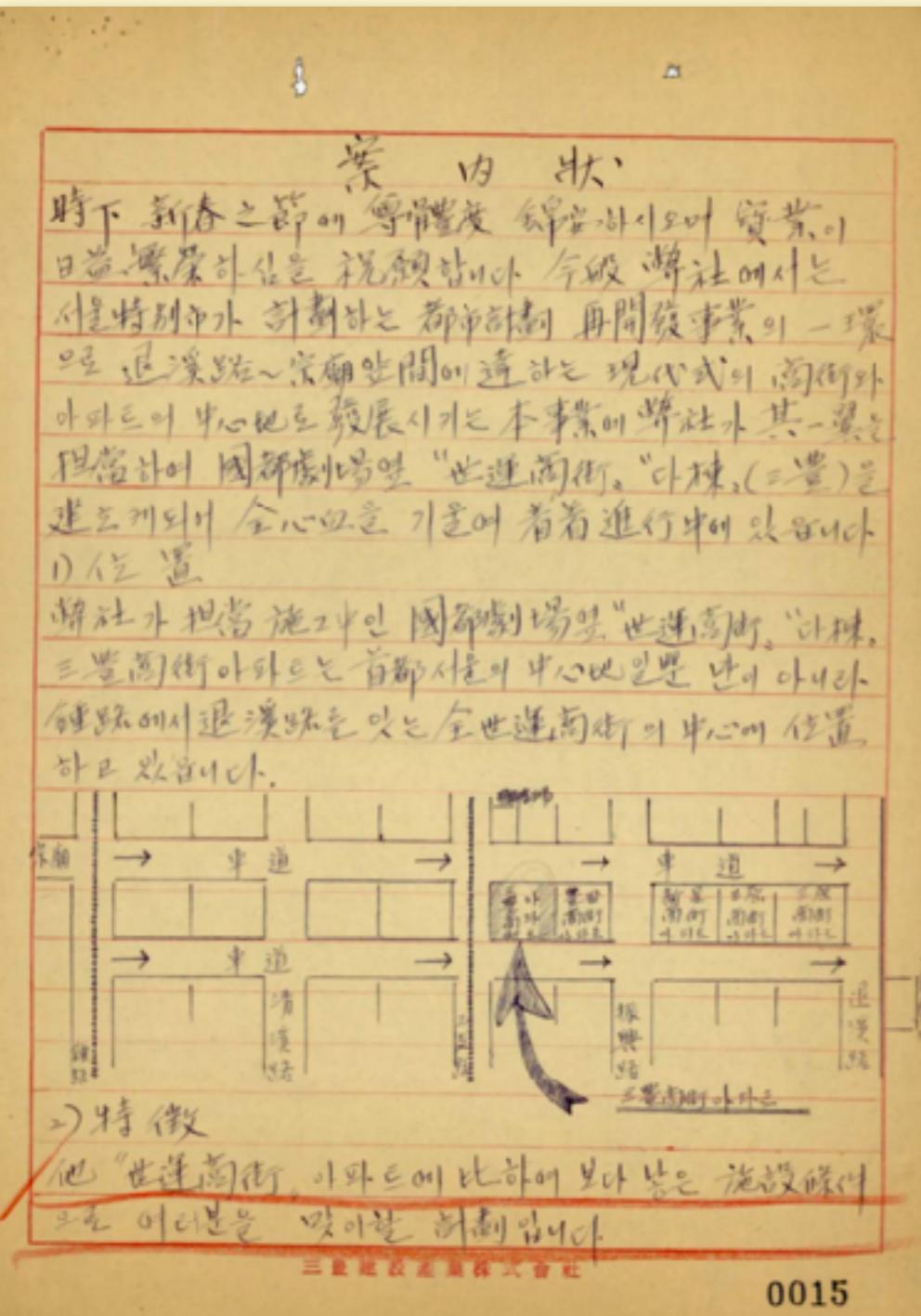


봄이오면(9) 청계천 암거공사 1961/2/9, 조선일보

1965







<세운상가> 안내장 발부 승인
1968년 4월 16일, 서울기록원 소장.

1960년대, 또다른 시작점

부하직원을 풀어 윤락여성 1천 9백 62명, 포주 1백 11명, 펨프 1백 27명을 찾아서 개개인의 사정을 알아봤다. “이같은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낮에는 윤락여성, 포주들을 모아놓고 반대하는 자는 가하없이 의 법처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밤에는 윤락여성 가운데 거물급(?)으로 통하는 이모양 등과 왕초 포주인 터주대감 김모 노인 등을 찾아가 협조해달라고 통사정을 했었다”고 이청장은 철거작전의 비결을 털어놓았다. (종로구청장 이희준에) 의하면 철거 후 윤락여성들은 대부분 고향으로 내려갔으며 2백 24명이 시립부녀보호소에서 미용, 편물 등 기술을 배우고 있고, 2백 15명 만이 계속 변두리 지역에 떠돌아다니고 있다. “서울시내 나머지 10개 철거지역의 철거도 종삼같이만 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윤락지대를 없앤 이청장은 자신이 만만했다. -

- “68년의 시련 <끝> 종3적선지대 철거” (1968/12/29, 조선일보)

그녀들은 어디로 향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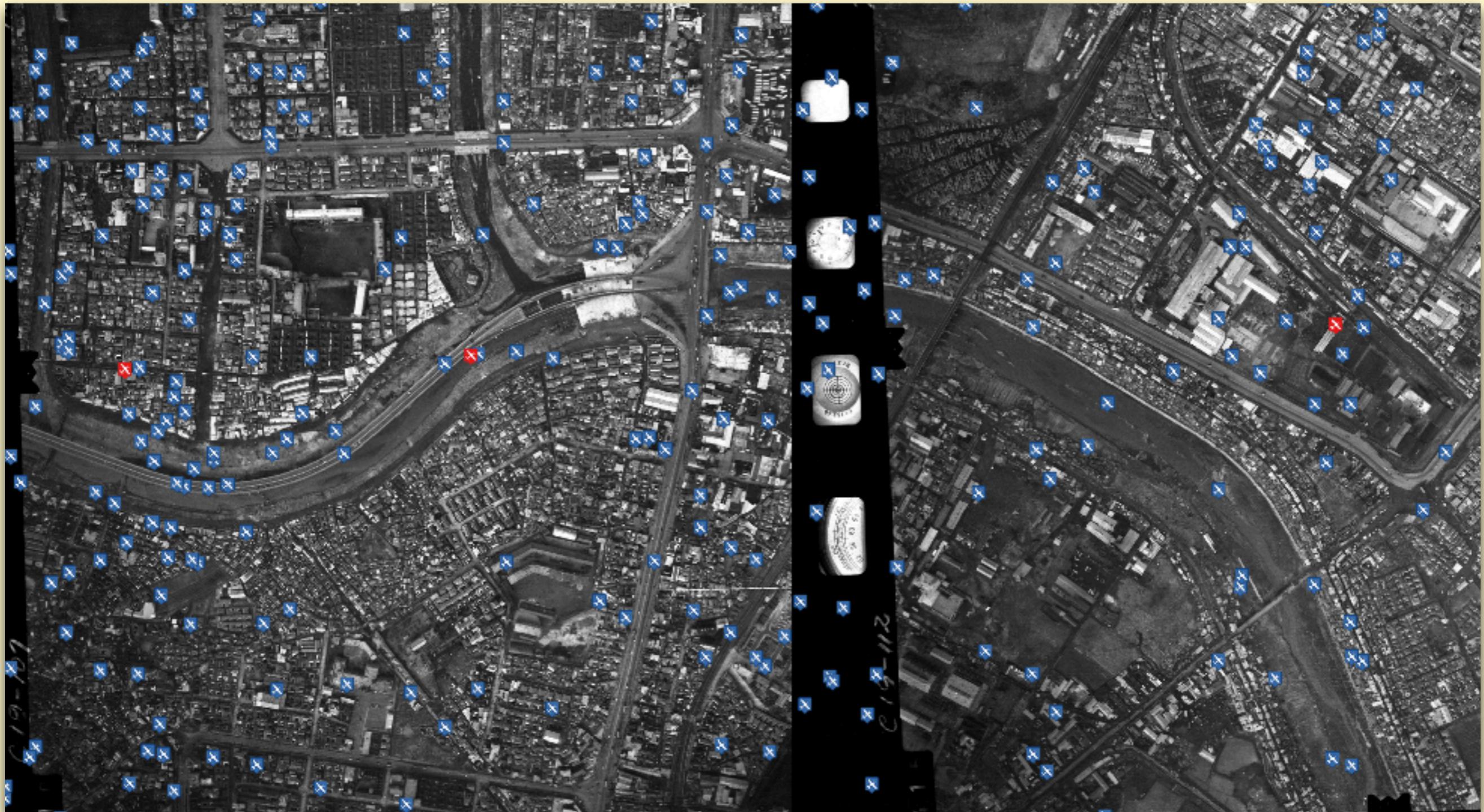
소장 김종렬 경위는 '주민의 생활수준이 낮고 우범요소를 고루 갖고 있어 24시간 근무체제에서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텍사스 촌으로 불리는 월곡동 88번지 일대 79개의 무허가 주점, 칼부림이 끊이지 않는 월곡동산 2 판자촌, 날치기, 소매치기가 들끓는 미아시장 등 3개 시장을 커버하려면 3개 파출소, 30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김소장은 강조했다.

- “11만명 치안을 12명이” (1971/11/12, 조선일보)

1968년 10월 5일, 경향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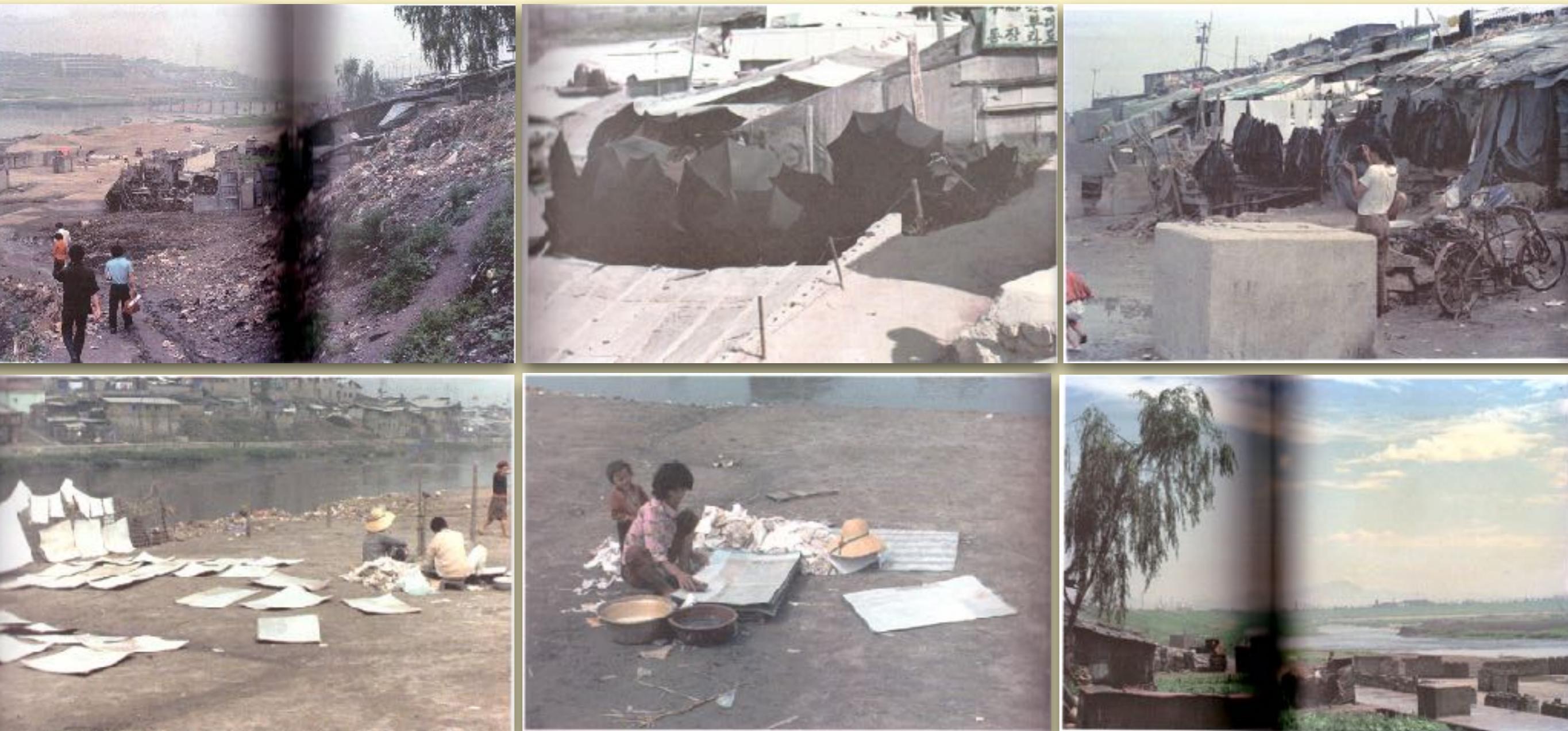
市勞組서 爭議
賃金60%引上요구
서울시청 속성소속 및 청
소차운전사 건설국산하 기
능공으로 구성된 4천5백
32명의 전국연합노조 서울
시청지부는 4일

속가 입전됐다.
부터 서울충무로 2가 테평
암민당 005호실 相進전설
주식회사(사장 金裕漢) 사부
실에서 일부 2백여명이 체
불노임을 달라고 능성을 벌
였다.
이들은 회화 5천원
지못하고 있는데 사무실
원 3년만 남겨놓고 사
비록 잡부들은 자취를
2百여명籠城
滯拂노임달라
鍾三 紅燈街완전澈去
주선전날인 5일상오 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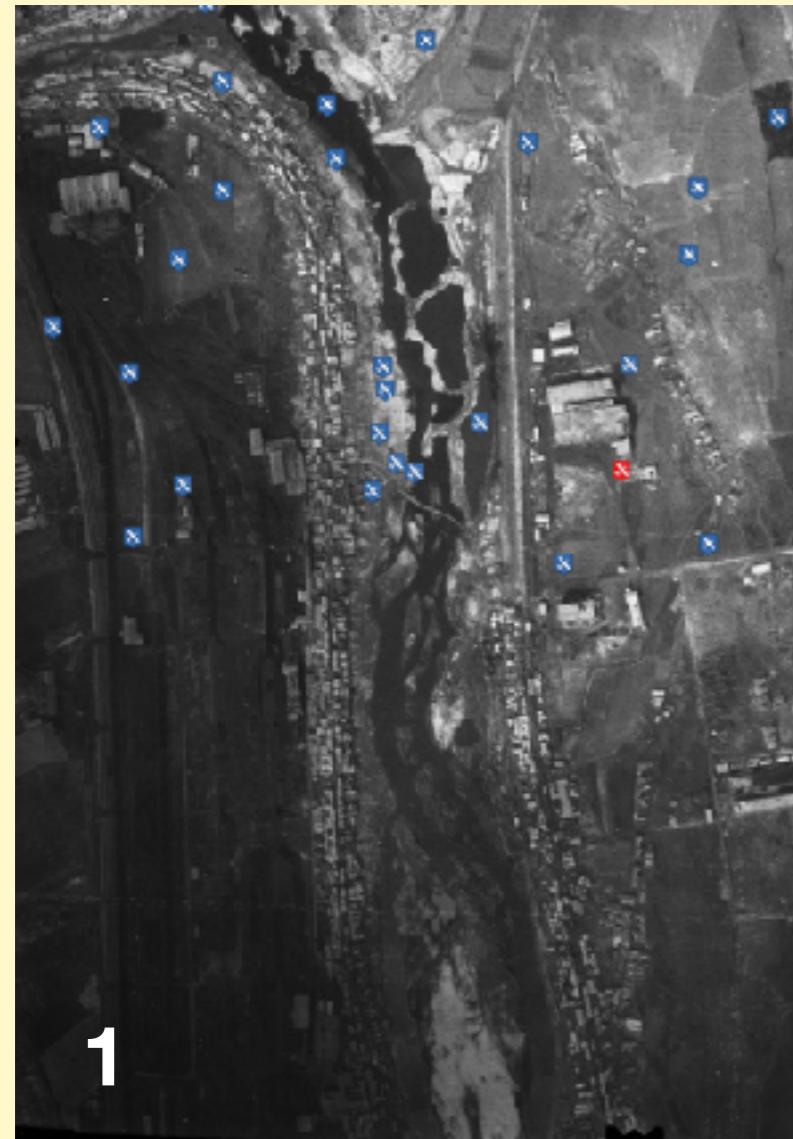


1972년 당시 마장동 근처 항공사진
서울특별시청 1972년 1차 촬영, 국토정보플랫폼

발전하는 서울, 소외당하는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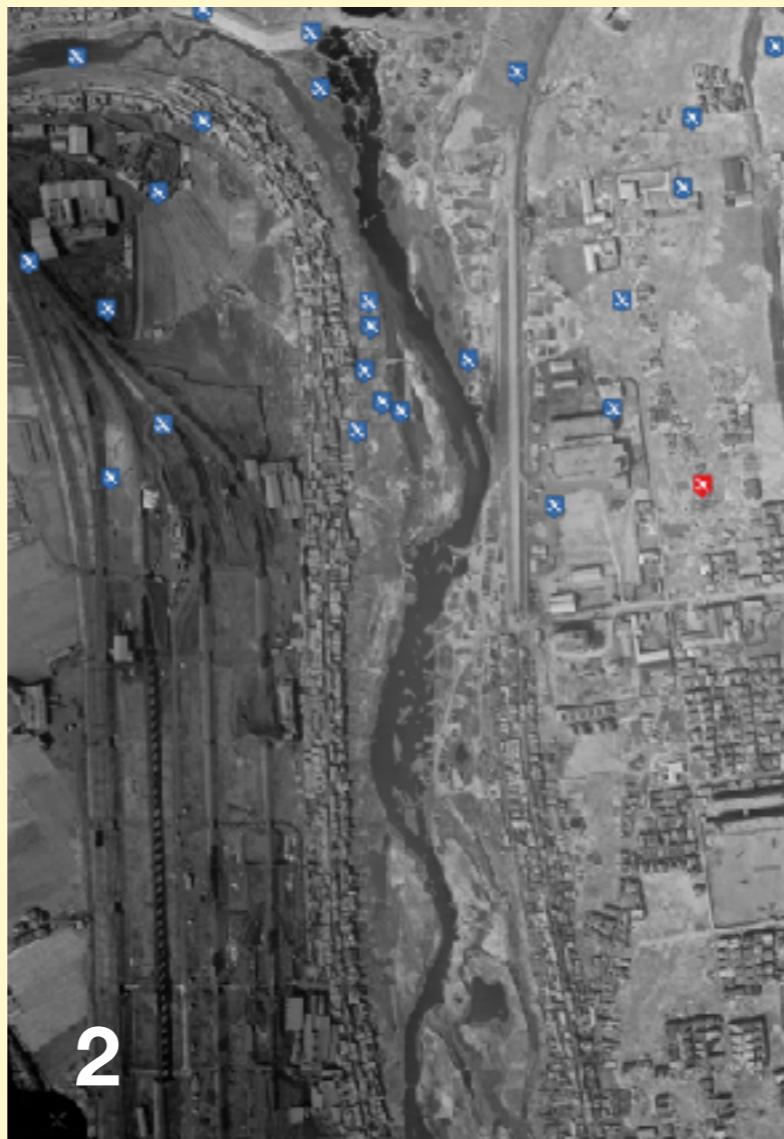


노무라 모토유키 사진(1973-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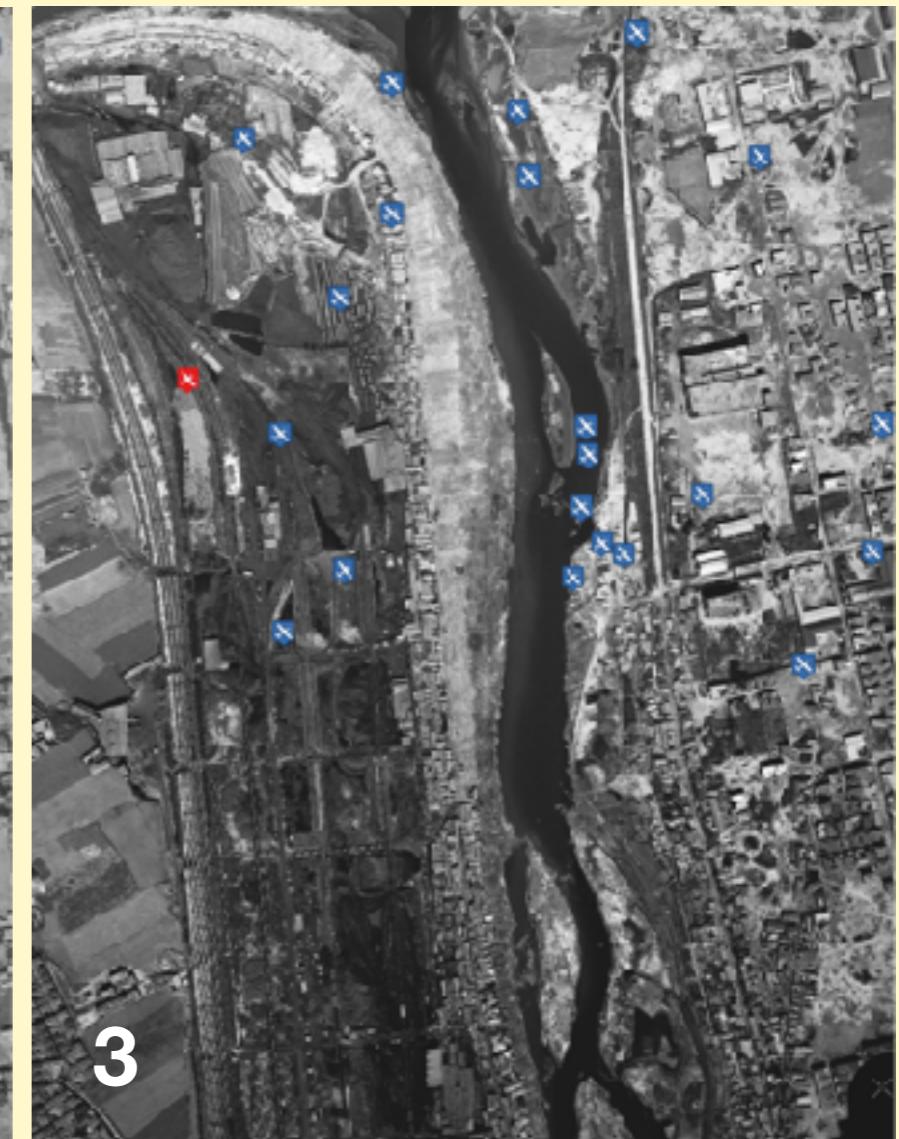
1

서울특별시청 1972년 1차촬영



2

서울특별시청 1975년 1차촬영



3

서울특별시청 1975년 2차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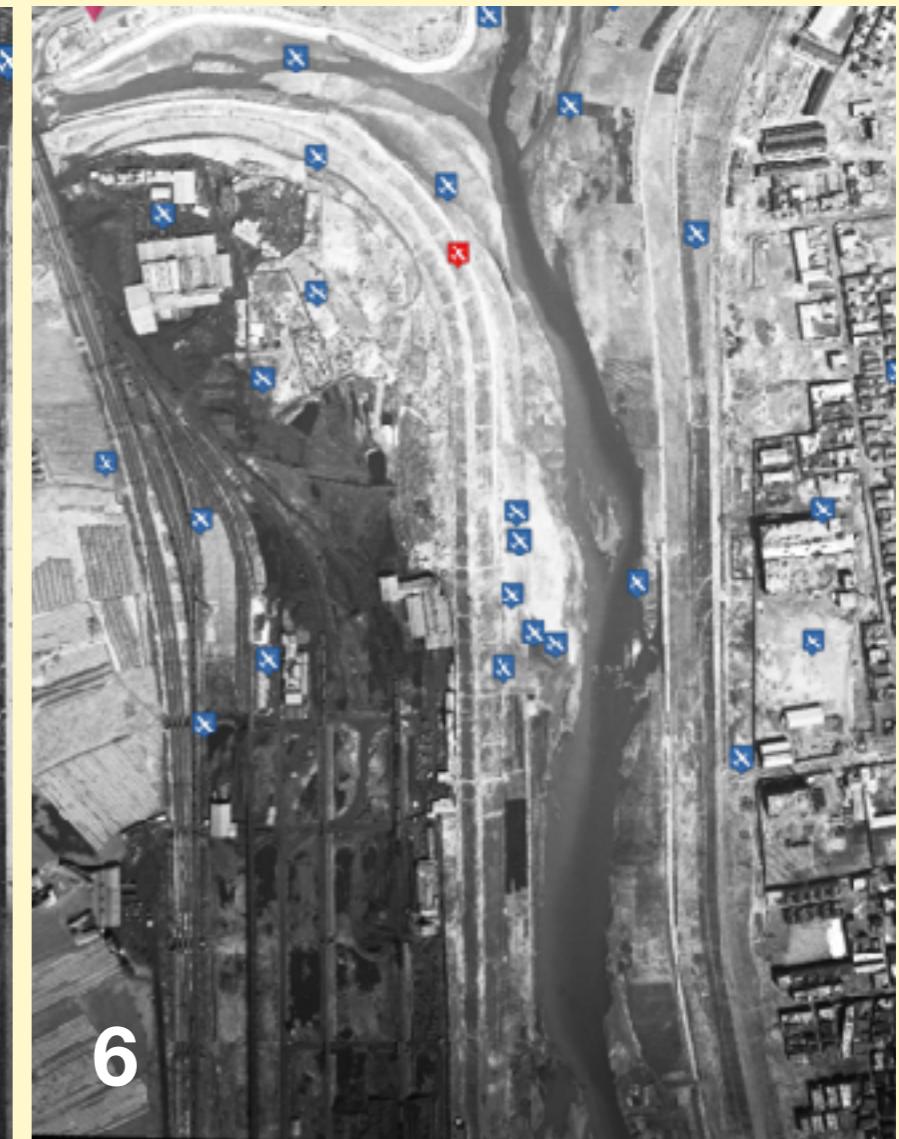
4

서울특별시청 1976년 1차촬영



5

서울특별시청 1976년 2차촬영



6

서울특별시청 1977년 1차촬영

제목

소제목

내용

제목

소제목

내용

제목

소제목

내용

제목

소제목

내용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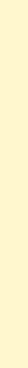
소제목

내용

제목

소제목

내용



제목

소제목

내용

제목

소제목

내용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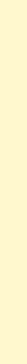
소제목

내용

제목

소제목

내용



제목

소제목

내용

제목

소제목

내용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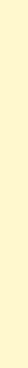
소제목

내용

제목

소제목

내용



제목

소제목

내용

제목

소제목

내용